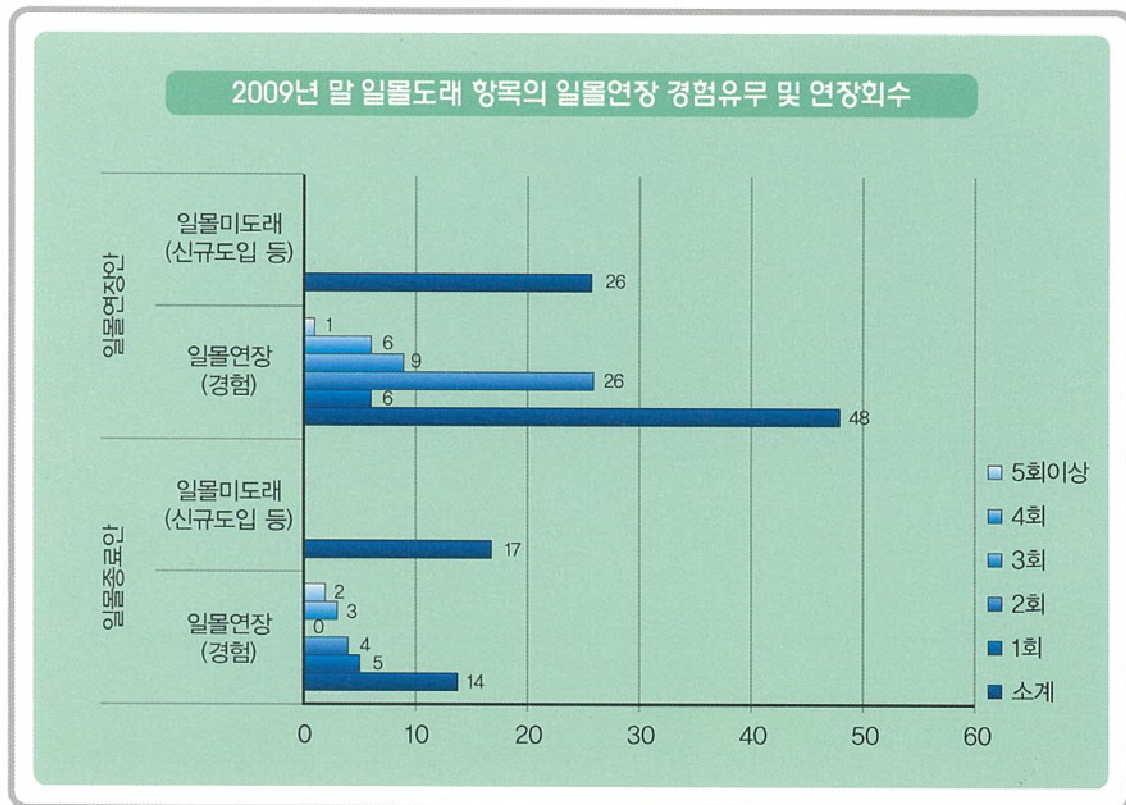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현황

정지은



20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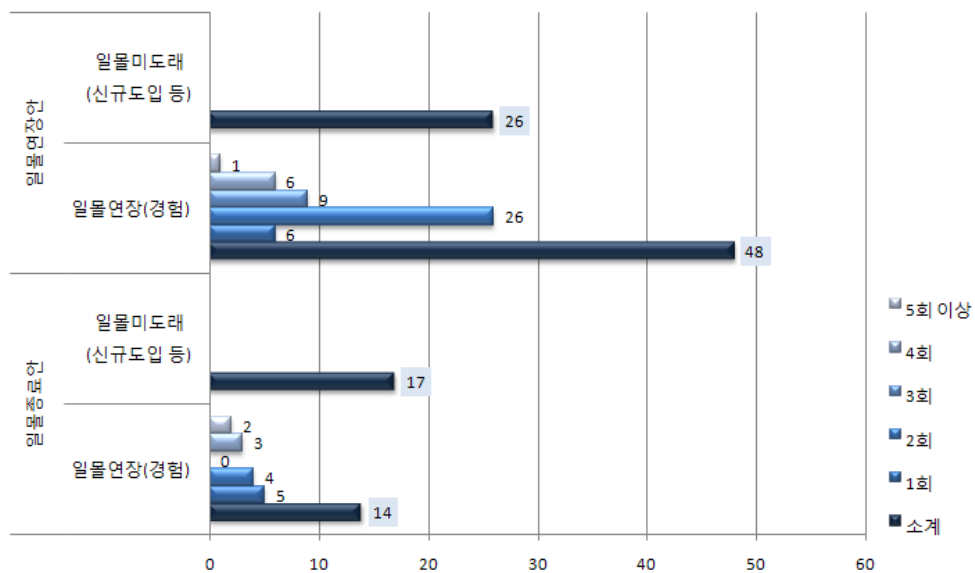
정지은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
02-788-4666
cce@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현황

정 지 은



2009. 1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서 론 / 1

I. 2009년 세제개편안과 일몰도래 항목 / 5

1. 개 관5

2. 2009년 세제개편안과 일몰도래 항목 분석7

II.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별 현황 / 13

참고문헌 /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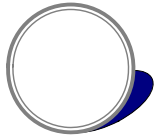
부 록 / 129

표 목차

[표 1]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현황	6
[표 2]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집계 현황	6
[표 3]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7
[표 4]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정보현황	9
[표 5]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	9

그림 목차

[그림 1]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8
[그림 2]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	10



서론

서 론

조세의 비과세·감면제도는 국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세율 등 세법상 일반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례규정의 형식으로 개인 또는 기업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를 보조금지원 등 예산을 통한 직접지출과 대비하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고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도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지방세 부문을 제외한 국세감면 금액)을 총 29조 6,32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¹⁾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 대비 15.1%, GDP대비 2.9%에 달하는 규모이며, 조세지출 중 그 규모가 추정되지 항목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조세지출이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조세지출은 정책대상 집단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활동을 장려하는 등 국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유인기제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부담 완화는 세입기반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수혜자집단과 비수혜자집단 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납세순응비용과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Toder, 2005; 임주영·정지선, 2006). 특히 조세지출은 해당 조세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의 존재로 인해 한번 설치되고 나면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폐지되지 않고 항구화하는 속성이 크다(Hacker, 2002). 이는 매년 의회의 심사를 받는 예산지출과 달리 일몰규정이 없는 한 의회에서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세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일반대중의 관심을 받기 쉽지 않아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y)’으로서 그 관리와 통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1) 기획재정부, 「2008년도 조세지출보고서」

특히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감세조치 등으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과세·감면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조합예탁금의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시행 등 2008년 말 이후 세제개편 내용 중 비과세·감면의 신설·확대로 인해 추정가능 한 2009년도 세수감소규모가 최소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9년 말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106개에 이르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기간동안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방향에 관한 논의가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는 해당 조세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초래하므로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기존 조세감면의 상당부분(2008년도의 경우 전체 총액의 70.1%)이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사회보장과 같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비과세·감면의 정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큰 실정이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귀결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확한 운용실태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의 개별항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용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집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관한 운용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분석서와 올해 말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자료집 총 2권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1권 -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 제1장에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감면 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간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을 정리·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2008년 국세통계연보(2007년 귀속 소득)부터 수록된 비과세·감면항목에 대한 납세자 신고통계를 기초로 감면항목별 수혜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앞장에서 정리·분석한 정보를 기초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권 -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현황 - 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9년 말 일몰도래 예정인 10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개별 항목별로 법적근거, 감면내용, 수혜자현황, 감면금액, 법 개정연혁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특히 2009년 9월 현재 개별 감면항목의 감면내용·수혜자 현황 등에 관한 기본정보 이외에 과거 감면금액추이와 법률 개정연혁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별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9년 세제개편안과 일몰도래 항목

1. 개 관
2. 2009년 세제개편안과 일몰도래 항목 분석

I. 2009년 세제개편안과 일몰도래 항목

1. 개 관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일몰규정(sunset provision)은 조세감면제도의 설치 이후 일정 시한이 도달하면 그 효력을 자동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계층 또는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감면의 실효성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항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제 입법과정에서 일몰규정은 해당 조세지원을 유지(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주기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일부 부가가치세·관세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009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수는 집계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²⁾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등 총 105개로 집계된다.³⁾

특히 일몰규정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감면 항목의 연도별 일몰도래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3개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2009년 103개, 2010년 14개, 2011년 21개, 2012년 16개, 2013년 2개, 2014년 3개 항목이 각각 일몰도래 할 예정이다. 전체 일몰도래 항목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이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
- 2)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세제개편안(2009.8.24)을 보면, 올해 말 일몰도래 항목을 총 87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NABO의 집계항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계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히려 기획재정부 집계 항목수 87건에는 올해 말 일몰도래 예정이었으나 2009년 상반기에 일몰이 연장된 8개의 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NABO는 근거법의 조문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조세지원 내용이 의미상 구분이 가능하고 조세지출보고서의 감면 규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위(필요한 경우 항 또는 호 단위)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 3)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106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8의2 제1항)’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2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감면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 현황

(단위 : 개,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항목수 (비중)	103 (54.6%)	41 (22.4)	21 (11.5)	16 (8.7)	2 (1.1)	3 (1.6)	186 (100.0)

2009년 말 일몰도래 하는 총 105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 조세지출보고서에서 감면금액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은 전체 항목의 54.7%에 해당하는 58개에 불과하여 2009년 말 일몰도래 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총 감면금액은 개별 항목의 감면금액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체 105개 항목 중 집계 가능한 58개 항목의 2008년도 감면금액(잠정)은 총 7조 4,527억 원으로 이는 2008년 총 조세(국세)감면액 29조 6,321억원의 2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집계되지 않은 45개 항목은 조세지출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나 감면금액이 추정곤란한 것으로 분류되었거나, 2008년 말 이후 신규로 도입된 항목, 조세지출보고서에서 누락되어 관리되지 않은 항목,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항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2]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집계 현황

	합 계	집 계	추정곤란	정보없음
항목수	105개 (100.0%)	58개 (60.2%)	3개 (2.9%)	45개 (36.9%)
감면금액	7조 4,542억원	7조 4,542억원	—	—

2. 2009년 세제개편안과 일몰도래 항목 분석⁴⁾

행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총 105개 일몰도래 항목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총 31개 항목에 대하여 일몰종료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74개 항목의 일몰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들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이후 일몰연장 여부와 일몰연장 경험에 있는 경우 그 연장회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5개 항목 중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은 전체의 59.0%인 62개 항목, 제도 또는 일몰규정이 신설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항목은 전체의 41%인 43개 항목으로 집계되었다.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 들 중 일몰 연장회수는 2회 및 1회가 각각 30개, 1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단위: 항목수, %)

구 분		소계	일몰연장 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합 계 (105)	일몰연장(경험)	62(59.0)	11	30	9	9	3
	일몰미도래 (신규도입 항목)	43(41.0)	—	—	—	—	—
일몰종료안 (31)	일몰연장(경험)	14(13.3)	5	4	0	3	2
	일몰미도래	17(16.2)	—	—	—	—	—
일몰연장안 (74)	일몰연장(경험)	48(45.7)	6	26	9	6	1
	일몰미도래	26(24.8)	—	—	—	—	—

주1: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106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조특 §18의2①)’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2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감면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하의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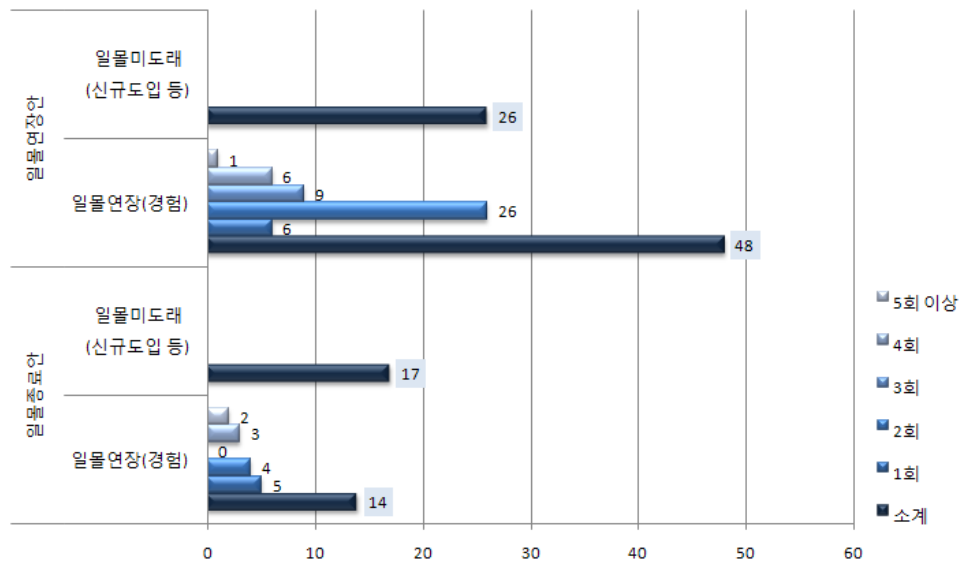
주2: 일몰 연장안 74건은 단순 일몰연장안(60건), 일몰연장 및 감면확대안(4건), 일몰연장 및 감면축소안(10건)을 모두 포함

올해 세제개편안의 총 74개의 일몰연장안 중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은 각각 48개(45.7%), 26개(24.8%)로 일몰연장 경험 있는 항목의 비중이 높고, 이 중 연장회수는 2회가 26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몰종료가 제안된 총 31

4) 2009년도 일몰도래 항목을 포함하는 2009년도 행정부 세제개편안에 관하여는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2009)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개 항목의 경우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은 각각 17개(16.2%), 14개(13.3%)로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항목이 일몰연장 경험이 있는 항목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일몰연장 경험 있는 항목들 중 연장회수는 1회가 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일몰연장 경험 및 연장회수



한편, 총 105개의 일몰도래 항목의 연간 감면금액에 대한 정보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보고서(2007~2008)」상의 과거 3년(2006~2008) 간 감면세액의 평균을 기초로 감면금액을 산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추계금액 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은 75개(69.5%), 추정근란으로 집계되는 항목이 3개(2.9%), 신규도입, 지방세 감면, 정보누락 등을 이유로 감면금액 정보를 알 수 없는 항목은 29개(27.6%)로 나타났다.

[표 4]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정보현황

감면금액 정보양태		항 목 수	비 율
추 계		73개	69.5%
추정곤란		3개	2.9%
정보없음 (29개, 27.6%)	신규도입	8개	7.6%
	지 방 세	10개	9.5%
	누 락	9개	8.6%
	기 타	2개	2.0%
합 계		105개	100.0%

주: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은 조세지출보고서를 기준으로 과거 3년(2006~2008) 추정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

아래의 표와 그림은 올해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을 2009년도 세제개편안의 개정방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우선 감면금액 정보가 있는 총 73개 항목 중 감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항목이 34개(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감면금액이 10~100억원인 항목이 17개(23.3%)로 감면금액 100억원 이하인 항목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감면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전체의 4.1%인 3개 항목이다.

[표 5]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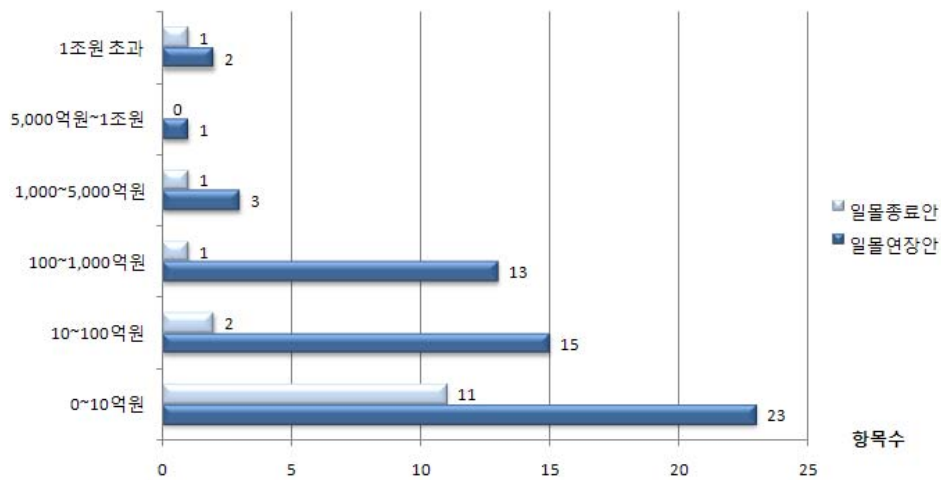
	일몰연장안	일몰종료안	전체항목
0~10억원	23(40.4)	11(68.8)	34(46.6)
10~100억원	15(26.3)	2(12.5)	17(23.3)
100~1,000억원	13(22.8)	1(6.3)	14(19.2)
1,000~5,000억원	3(5.3)	1(6.3)	4(5.5)
5,000억원~1조원	1(1.8)	0(0.0)	1(1.4)
1조원 초과	2(3.5)	1(6.3)	3(4.1)
계	57(100.0)	16(100.0)	73(100.0)

2009년도 감면금액 정보가 있는 일몰도래 항목(73개) 중 일몰연장안 및 일몰종료안이 제시된 항목은 각각 57개와 16개이다. 각각의 감면금액 분포는 전체항목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

물종료안의 경우 감면금액 10억원 이하인 항목의 비중이 전체(16개) 항목의 68.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몰종료안 중 감면금액 1조원 초과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고, 감면금액 1,000~5,000억원 및 감면금액 100~1,000억원 항목은 모두 ‘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공모펀드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이다.

한편 일몰연장안 중 감면금액 1조원 초과 항목은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항목이며, 감면금액 5,000~1조원인 ‘항목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항목이다.

[그림 2] 2009년 말 일몰도래 항목의 감면금액 분포현황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별 현황**

II. 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항목별 현황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신설연월일	○ 2001.12.29																																																								
감면내용	○ 대상업종: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33개 ○ 대상자산: 사업용자산, POS시스템 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 공제율: 투자금액의 3%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중소기업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계</td><td>379</td><td>291</td><td>259.4</td><td>382</td><td>186.5</td><td>157.9</td></tr><tr><td>법인세</td><td>297</td><td>247</td><td>225.8</td><td>323.1</td><td>149.3</td><td>132.7</td></tr><tr><td>소득세</td><td>82</td><td>44</td><td>33.6</td><td>58.9</td><td>37.2</td><td>25.2</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110</td><td>268</td><td>55</td><td>69</td><td>96</td><td>-12.8</td></tr><tr><td>법인세</td><td>81</td><td>253</td><td>48</td><td>63</td><td>90</td><td>-11.3</td></tr><tr><td>소득세</td><td>29</td><td>15</td><td>7</td><td>6</td><td>6</td><td>-23.0</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379	291	259.4	382	186.5	157.9	법인세	297	247	225.8	323.1	149.3	132.7	소득세	82	44	33.6	58.9	37.2	25.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110	268	55	69	96	-12.8	법인세	81	253	48	63	90	-11.3	소득세	29	15	7	6	6	-23.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379	291	259.4	382	186.5	157.9																																																			
법인세	297	247	225.8	323.1	149.3	132.7																																																			
소득세	82	44	33.6	58.9	37.2	25.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110	268	55	69	96	-12.8																																																			
법인세	81	253	48	63	90	-11.3																																																			
소득세	29	15	7	6	6	-23.0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3.12.31까지) ○ 2000.12.29: 세액공제대상에 POS설비 추가 ○ 2003.12.30: 세액공제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추가 일몰연장(2003.12.31 → 2006.12.31) ○ 2007.12.31: 일몰연장(2006.12.31 → 2009.12.31)																																																								

②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																																				
신설연월일	○ 2002.12.29																																				
감면내용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에 따라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기업정보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 감면대상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 ○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 중소기업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기타(손금산입)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2002</th><th>2003</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0.03</td><td>0.4</td><td>0.1</td><td>0</td><td>4</td><td>7</td><td>8</td><td>253.7</td></tr><tr><td>법인세</td><td>0.03</td><td>0.4</td><td>0.1</td><td>0</td><td>4</td><td>7</td><td>8</td><td>253.7</td></tr><tr><td>소득세</td><td>0.0</td><td>0.0</td><td>0.0</td><td>0.0</td><td>0.0</td><td>0.0</td><td>0.0</td><td>0.0</td></tr></tabl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0.03	0.4	0.1	0	4	7	8	253.7	법인세	0.03	0.4	0.1	0	4	7	8	253.7	소득세	0.0	0.0	0.0	0.0	0.0	0.0	0.0	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0.03	0.4	0.1	0	4	7	8	253.7																													
법인세	0.03	0.4	0.1	0	4	7	8	253.7																													
소득세	0.0	0.0	0.0	0.0	0.0	0.0	0.0	0.0																													
주요 개정연혁	○ 2002.12.29: 제도 도입 ○ 2006.12.30: 일몰신설(2009.12.31까지)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신설연월일	○ 1986.12.26																																																								
감면내용	○ 감면내용: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의 세액감면 ○ 감면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감면업종: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22개 업종 ○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계</td><td>215</td><td>270.6</td><td>499</td><td>773.2</td><td>1,137</td><td>1,547</td></tr><tr><td>법인세</td><td>171</td><td>227.3</td><td>426.7</td><td>701.6</td><td>1,065</td><td>1,456</td></tr><tr><td>소득세</td><td>44</td><td>43.3</td><td>72.3</td><td>71.6</td><td>72</td><td>91</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1,863</td><td>2,389</td><td>1,883</td><td>1,758</td><td>1,707</td><td>23.0</td></tr><tr><td>법인세</td><td>1,755</td><td>2,242</td><td>1,732</td><td>1,591</td><td>1,516</td><td>24.4</td></tr><tr><td>소득세</td><td>108</td><td>147</td><td>151</td><td>167</td><td>191</td><td>15.8</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15	270.6	499	773.2	1,137	1,547	법인세	171	227.3	426.7	701.6	1,065	1,456	소득세	44	43.3	72.3	71.6	72	91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1,863	2,389	1,883	1,758	1,707	23.0	법인세	1,755	2,242	1,732	1,591	1,516	24.4	소득세	108	147	151	167	191	15.8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15	270.6	499	773.2	1,137	1,547																																																			
법인세	171	227.3	426.7	701.6	1,065	1,456																																																			
소득세	44	43.3	72.3	71.6	72	91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1,863	2,389	1,883	1,758	1,707	23.0																																																			
법인세	1,755	2,242	1,732	1,591	1,516	24.4																																																			
소득세	108	147	151	167	191	15.8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3.12.31까지) ○ 2001.12.29 - 감면대상 업종 확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추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세액감면기간 축소: 소득발생연도부터 6년간(50%) → 4년간(50%) ○ 2004.10.5 - 감면대상 업종확대: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무역전시사업 ○ 2004.12.31: 감면대상업종 확대(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 추가) ○ 2006.12.30: 일몰연장(2006.12.31 → 2009.12.31) ○ 2007.12.31: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간 연장(창업 후 2년 이내 → 3년 이내) ○ 2008.12.26 - 감면대상 확대: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④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신설연월일	○ 199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주로 대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시 특례인정 - 기증자(대기업):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 수증자(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 감면대상설비: 자동화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내국인 및 중소기업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기타(손금산입)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th><th>2008^P</th></tr><tr><td>계</td><td>추정곤란</td><td>0.1</td><td>0.01</td><td>0.01</td><td>.....</td><td>0</td></tr><tr><td>법인세</td><td>-</td><td>0.1</td><td>0.01</td><td>0.01</td><td>.....</td><td>0</td></tr><tr><td>소득세</td><td>-</td><td>0</td><td>0</td><td>0</td><td>.....</td><td>0</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8 ^P	계	추정곤란	0.1	0.01	0.01		0	법인세	-	0.1	0.01	0.01		0	소득세	-	0	0	0		0
	1998	1999	2000	2001		2008 ^P																							
계	추정곤란	0.1	0.01	0.01		0																							
법인세	-	0.1	0.01	0.01		0																							
소득세	-	0	0	0		0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특례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 저가 양도시에도 인정 ○ 2002.12.11: 제도 폐지 ○ 2006.12.30: 제도 재신설 -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기증자는 손금산입, 수증자는 익금불산입 특례 인정 - 일몰기한: 2009.12.31 ○ 2007.12.31 - 특례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시 → 저가 양도시에도 인정 - 중소기업이 기증받은 설비가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손금산입 특례로 변경																												

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2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이를 구분 경리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불산입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i)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연도에 또는 ii)연구개발을 위한 자산취득의 경우 감가상각·처분시 익금환입 ○ 연구개발 출연금 등 근거법규(시행령) - 「기술개발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화촉진 기본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	○ 2008년도: 법인세 3억원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0조																																																								
신설연월일	○ 1981.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감면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한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계</td><td>224</td><td>349</td><td>400.3</td><td>411</td><td>219.2</td><td>524</td></tr><tr><td>법인세</td><td>223</td><td>343</td><td>399.8</td><td>410</td><td>218.8</td><td>523.2</td></tr><tr><td>소득세</td><td>1</td><td>6</td><td>0.5</td><td>1</td><td>0.4</td><td>0.8</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531</td><td>351</td><td>511</td><td>461</td><td>1,128</td><td>17.5</td></tr><tr><td>법인세</td><td>529</td><td>350</td><td>510</td><td>459</td><td>1,126</td><td>17.6</td></tr><tr><td>소득세</td><td>2</td><td>0.8</td><td>1</td><td>2</td><td>2</td><td>7.2</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24	349	400.3	411	219.2	524	법인세	223	343	399.8	410	218.8	523.2	소득세	1	6	0.5	1	0.4	0.8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531	351	511	461	1,128	17.5	법인세	529	350	510	459	1,126	17.6	소득세	2	0.8	1	2	2	7.2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24	349	400.3	411	219.2	524																																																			
법인세	223	343	399.8	410	218.8	523.2																																																			
소득세	1	6	0.5	1	0.4	0.8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531	351	511	461	1,128	17.5																																																			
법인세	529	350	510	459	1,126	17.6																																																			
소득세	2	0.8	1	2	2	7.2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3.12.31까지) ○ 2000.12.29 － 감면제도 명칭 변경: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1.12.29: 세액 공제율 확대(5% → 10%),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 허용(단,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제외) ○ 2002.12.11: 세액 공제율 축소(10% → 7%) ○ 2003.12.30: 일몰연장(2003.12.31 →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2006.12.31 → 2009.12.31) ○ 2008.9.26 － 설비투자 공제율 인상: 7% → 10%(적용시기: 2008과세연도 투자분부터)																																																								

⑦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신설연월일	○ 2000.12.29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을 설정등록, 보유,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당해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 감면한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을 취득한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table><tr><th></th><th>2007</th><th>2008^P</th></tr><tr><td>계</td><td>18</td><td>8</td></tr><tr><td>법인세</td><td>15</td><td>5</td></tr><tr><td>소득세</td><td>3</td><td>3</td></tr></table>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기술이전소득에 세액감면(제12조1항)” 항목과 통합되어 있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2007	2008 ^P	계	18	8	법인세	15	5	소득세	3	3
	2007	2008 ^P											
계	18	8											
법인세	15	5											
소득세	3	3											
주요 개정연혁	○ 2000.12.29 - 제도 신설: 특허권 등 취득가액의 3%(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2002.12.11 -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10% → 7%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⑧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법인세 등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3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기업, 연구소 기업으로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초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지원대상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 연구소기업은 동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설립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지정 또는 승인
수혜자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감면세액	○ 2008년도 법인세: 1억원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 신설

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11조의2															
신설연월일	○ 1984.4.9															
감면내용	○ 감면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①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②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적용요건 <table><tr><th>출자자</th><th>경 유(간접투자)</th><th>투자처</th></tr><tr><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td><td>-</td><td>창업자 또는 벤처기업</td></tr><tr><td>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d>-</td><td>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td></tr><tr><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td><td>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td><td>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td></tr><tr><td>기금관리 · 운용법인 또는 공제사업 영위법인</td><td>상 동</td><td>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td></tr></table> ○ 주식 취득요건 - 설립시 자본금납입 방법 - 설립 후 7년 이내(① 유상증자금 납입 또는 ② 잉여금 자본전입 또는 ③ 채무의 자본전환) -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출자자	경 유(간접투자)	투자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기금관리 · 운용법인 또는 공제사업 영위법인	상 동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출자자	경 유(간접투자)	투자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기금관리 · 운용법인 또는 공제사업 영위법인	상 동	창업자 ·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수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감면세목	○ 법인세															

구 분	주요 내용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법인세</td><td>추정곤란</td><td>0.01</td><td>70</td><td>204</td><td>84</td><td>25</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법인세</td><td>21</td><td>21</td><td>42</td><td>19</td><td>39</td><td>-7.1</td></tr></table> ※ 연평균 증가율은 1998년도와 1999년도를 제외한 수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추정곤란	0.01	70	204	84	25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21	21	42	19	39	-7.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추정곤란	0.01	70	204	84	25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21	21	42	19	39	-7.1																							
주요 개정연혁	○ 1989.12.28 - 일몰신설(일부): 출자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부분, 2003.12.31까지 ○ 2000.12.29 - 감면대상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 2001.12.29 - 감면대상 확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제지원 ○ 2003.12.30 - 일몰연장(일부): 출자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부분, 2003.12.31 → 2006.12.31 ○ 2005.7.13 - 감면대상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 추가 ○ 2006.12.30 - 일몰연장(일부): 배당소득 비과세 부분, 2006.12.31 → 2009.12.31 - 일몰신설(일부): 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부분, 2009.12.31까지 ○ 2008.12.26 - 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14조제2항) 조문 이관																												

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신설연월일	○ 1993.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다음의 출자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제1항) － 비과세 대상 출자 주식 또는 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출자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4항~제6항)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 조합이 지출한 비용에서 차감 － 특례 대상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 ○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 거주자(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포함)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법인세</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법인세</td><td>0</td><td>0.03</td><td>0.16</td><td>0</td><td>0</td><td>－</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0	0.03	0.16	0	0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0	0.03	0.16	0	0	－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일부): 2003.12.31까지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비과세(제2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4~6항) ○ 2000.12.29 - 일몰신설(일부): 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2항), 2001.12.31까지 ○ 2001.12.29 - 감면대상 확대: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제1항) 대상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추가 - 일몰연장(일부): 기관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제2항), 2002.12.31까지 ○ 2002.12.11 - 일몰연장(일부): 기관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제2항), 2005.12.31까지 ○ 2003.12.30 - 일몰종료(일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비과세(제2항) - 일몰연장(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4~6항), 2006.12.31까지 ○ 2005.7.13 - 감면대상 확대: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제1항) 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추가 ○ 2005.12.31 - 일몰연장(일부): 기관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제2항), 2007.12.31까지 ○ 2006.12.30 - 일몰신설(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1항), 2009.12.31(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2007.12.31)까지 - 일몰연장(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4~6항), 2009.12.31(기업구조조정조합은 2007.12.31)까지 ○ 2007.12.31 - 일몰종료(일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시 양도소득 비과세(제1항제5호) - 일몰연장(일부): 기관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제2항),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4항, 제7항), 2009.12.31까지 ○ 2008.12.26 - 기관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문변경: 제13조로 이관

⑪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신설연월일	○ 1969.7.31 ※ 1999년 이전: 소득세법 § 13①2에서 규정																												
감면내용	○ 감면내용: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제1항)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제2항)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면제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시행령, 제1항)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 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3년 이상 종사자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연구원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외국인 기술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소득세 추정곤란</td><td>1.1</td><td>3</td><td>3</td><td>8</td><td>10</td><td></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소득세</td><td>14</td><td>22</td><td>17</td><td>16</td><td>170</td><td>75.1</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추정곤란	1.1	3	3	8	10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14	22	17	16	170	75.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추정곤란	1.1	3	3	8	10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14	22	17	16	170	75.1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제1항): 2003.12.31까지 -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제2항) 신설 ○ 2003.12.30 - 일몰연장(제1항):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제1항): 2006.12.31 → 2009.12.31 - 일몰신설(제2항): 2009.12.31까지																												

⑫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연월일	○ 2003.12.30 ※ 2003년 이전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월정액급여 감면제도 시행 2002년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																				
감면내용	○ 감면내용: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가능 ①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② 15% 단일 특례세율 적용 (단, 소득세 관련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배제) ○ 일몰기한: 2009.12.31(단 15% 단일 특례세율은 2012.12.31)까지																				
수혜자	○ 외국인근로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기타																				
감면세목	○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소득세</td><td>추정곤란</td><td>65</td><td>128</td><td>217</td><td>288</td><td>64.2</td></tr></table>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추정곤란	65	128	217	288	64.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추정곤란	65	128	217	288	64.2															
주요 개정연혁	○ 2002.12.11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정액급여의 20% → 40% - 근거규정 조특법 이관 ○ 2003.12.30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과세체계 간소화(현행 과세체계) : ①총급여액의 30% 비과세 또는 ②단일세율 17%(분리과세) 중 선택 ○ 2006.12.30 - 일몰신설: 2006.12.31까지 ○ 2008.12.26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 인하: 17% → 15% - 일몰연장(일부): 단일 특례세율(제2항)만 2009.12.31 → 2012.12.31																				

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신설연월일	○ 1976.12.22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감면세목	○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법인세</td><td>143</td><td>144</td><td>153</td><td>233</td><td>180</td><td>183</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법인세</td><td>338</td><td>398</td><td>404</td><td>276</td><td>347</td><td>9.3</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143	144	153	233	180	183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338	398	404	276	347	9.3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143	144	153	233	180	183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338	398	404	276	347	9.3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신설연월일	○ 1981.12.31 ※ 1994.3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분리 신설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에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일정배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감면대상 시설: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 ○ 공제율: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계</td><td>2,010</td><td>2,025</td><td>2,890</td><td>1,946</td><td>526.6</td><td>447.4</td></tr><tr><td>법인세</td><td>1,995</td><td>1,999</td><td>2,886</td><td>1,938</td><td>523.0</td><td>475.4</td></tr><tr><td>소득세</td><td>15</td><td>26</td><td>4</td><td>8</td><td>3.6</td><td>2</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계</td><td>548</td><td>303</td><td>281</td><td>394</td><td>321</td><td>- 16.8</td></tr><tr><td>법인세</td><td>546</td><td>302</td><td>280</td><td>393</td><td>320</td><td>- 16.7</td></tr><tr><td>소득세</td><td>2</td><td>1</td><td>1</td><td>1</td><td>1</td><td>- 23.7</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010	2,025	2,890	1,946	526.6	447.4	법인세	1,995	1,999	2,886	1,938	523.0	475.4	소득세	15	26	4	8	3.6	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548	303	281	394	321	- 16.8	법인세	546	302	280	393	320	- 16.7	소득세	2	1	1	1	1	- 23.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010	2,025	2,890	1,946	526.6	447.4																																																			
법인세	1,995	1,999	2,886	1,938	523.0	475.4																																																			
소득세	15	26	4	8	3.6	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548	303	281	394	321	- 16.8																																																			
법인세	546	302	280	393	320	- 16.7																																																			
소득세	2	1	1	1	1	- 23.7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연장: 1998.12.31 → 2000.12.31 ○ 2000.12.29 - 일몰연장: 2000.12.31→2003.12.31 - 감면율 조정: 5%→ 5%(중소기업 외의 자 3%) - 감면대상 중 ‘노후시설개체투자’ 제외 - 감면대상 확대: 정보화투자지원 신설 ·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전자상거래설비 투자 추가 :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에 허용 ○ 2001.12.29 - 공제율 조정: 중소기업이 ERP시스템 투자시 5% → 10% - ERP, 전자상거래설비의 경우 수도권 투자에 대해 공제 허용(제 130조)																																																								

구 분	주요 내용
	○ 2002.12.11 - 중소기업 공제율 조정: 5%(ERP시스템 10%) → 7% - 감면대상 확대: 공급망관리시스템(SCM),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설비 추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감면대상 확대: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소기업 → 대기업도 허용), 첨단기술설비: 제조업 → 모든 업종에 허용 ○ 2004.12.31 - 감면방식 확대: 중소기업이 ERP등 설비를 직접구매하지 않고 ASP방식 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비용의 7% 세액공제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sion): IT설비와 S/W를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ERP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2007.12.31 - 감면대상 확대: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 추가

⑮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신설연월일	○ 1981.12.31 ※ 2004년부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환경안전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 변경, 2008년부터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별도 조문으로 분리신설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대상 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시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계</td><td>685</td><td>793</td><td>705</td><td>435</td><td>107.5</td><td>165.3</td></tr><tr><td>법인세</td><td>682</td><td>761</td><td>703.3</td><td>433.3</td><td>106.7</td><td>164.5</td></tr><tr><td>소득세</td><td>3</td><td>32</td><td>1.7</td><td>1.7</td><td>0.8</td><td>0.8</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계</td><td>84</td><td>144</td><td>112</td><td>128</td><td>177</td><td>-12.7</td></tr><tr><td>법인세</td><td>84</td><td>144</td><td>112</td><td>128</td><td>177</td><td>-12.6</td></tr><tr><td>소득세</td><td>0.3</td><td>0.2</td><td>0.2</td><td>0.1</td><td>0.08</td><td>-30.4</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685	793	705	435	107.5	165.3	법인세	682	761	703.3	433.3	106.7	164.5	소득세	3	32	1.7	1.7	0.8	0.8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84	144	112	128	177	-12.7	법인세	84	144	112	128	177	-12.6	소득세	0.3	0.2	0.2	0.1	0.08	-30.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685	793	705	435	107.5	165.3																																																			
법인세	682	761	703.3	433.3	106.7	164.5																																																			
소득세	3	32	1.7	1.7	0.8	0.8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84	144	112	128	177	-12.7																																																			
법인세	84	144	112	128	177	-12.6																																																			
소득세	0.3	0.2	0.2	0.1	0.08	-30.4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연장: 1998.12.31 → 2000.12.31 ○ 2000.12.29 - 일몰연장: 2000.12.31→2003.12.31 - 공제율 축소: 5 → 3% - 공제대상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방지시설 추가 - 공제대상에서 ‘에너지절약시설’ 제외 → 별도 조항으로 감면제도 신설																																																								

구 분	주요 내용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4.12.31 － 공제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추가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2007.12.31 － 공제대상에 환경보전시설투자 제외 → 별도 조문(25조의3)으로 신설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투자금액의 3% → 7% － 일몰기한: 2010.12.31 까지 ○ 2008.12.26 － 환경보전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7%→ 8%(2009.12.31까지 10%)

①⑥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2																																																
신설연월일	○ 1978.12.5 ※ 1981년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포함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완제품 등 제조 시설 등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d>—</td></tr><tr><td>계</td><td>102</td><td>159</td><td>465</td><td>230</td><td>—</td></tr><tr><td>법인세</td><td>102</td><td>159</td><td>464.5</td><td>229</td><td>—</td></tr><tr><td>소득세</td><td>0</td><td>0</td><td>0.5</td><td>1</td><td>—</td></tr><tr><td></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계</td><td>232</td><td>283</td><td>676</td><td>1,304</td><td>43.9</td></tr><tr><td>법인세</td><td>230.7</td><td>282</td><td>675</td><td>1,032</td><td>39.2</td></tr><tr><td>소득세</td><td>1.7</td><td>1</td><td>1</td><td>2</td><td>—</td></tr></table>		2001	2002	2003	2004	—	계	102	159	465	230	—	법인세	102	159	464.5	229	—	소득세	0	0	0.5	1	—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232	283	676	1,304	43.9	법인세	230.7	282	675	1,032	39.2	소득세	1.7	1	1	2	—
	2001	2002	2003	2004	—																																												
계	102	159	465	230	—																																												
법인세	102	159	464.5	229	—																																												
소득세	0	0	0.5	1	—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232	283	676	1,304	43.9																																												
법인세	230.7	282	675	1,032	39.2																																												
소득세	1.7	1	1	2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연장: 1998.12.31 → 2000.12.31 ○ 2000.12.29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에서 별도 조항으로 신설 － 공제율: 투자금액의 10% － 일몰기한: 2002.12.31까지 ○ 2002.12.11 － 일몰연장: 2002.12.31 → 2005.12.31 － 공제율 축소: 10% → 7%																																																

구 분	주요 내용
	○ 2004.12.31 － 공제율 인상: 7%→ 10% － 공제대상시설 확대: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추가 (시행규칙 개정) ○ 2005.12.30 － 일몰연장: 2005.12.31 → 2008.12.31 ○ 2008.9.26 － 공제율확대: 10%→ 20%(적용: 2008.9.26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 일몰 연장: 2008.12.31→2009.12.31

⑰ 임시투자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																																																								
신설연월일	○ 1982.1.1 ※ 1982년~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																																																								
감면내용	○ 감면내용: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를 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당기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증가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공제율(시행령): ① 당기분: 사업용자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 사업용자산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10% ② 증가분: 10% ○ 공제대상 업종(시행령):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등 ○ 공제 대상시설(시행규칙) － 제조업 등: 모든 설비투자(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 제외) － 건설업: 설비투자 및 포크레인 등 중장비 포함 － 도소매업·물류산업: 설비투자 및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포함 등 ○ 일몰기한(시행령): 2009.12.31까지																																																								
수혜자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계</td><td>649</td><td>1,153</td><td>4,388</td><td>7,025</td><td>6,528</td><td>13,019</td></tr><tr><td>법인세</td><td>530</td><td>1,016</td><td>4,117</td><td>6,778</td><td>6,309</td><td>12,778</td></tr><tr><td>소득세</td><td>119</td><td>137</td><td>271</td><td>247</td><td>219</td><td>241</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계</td><td>18,134</td><td>25,439</td><td>20,681</td><td>18,247</td><td>21,035</td><td>41.6</td></tr><tr><td>법인세</td><td>17,806</td><td>24,577</td><td>19,894</td><td>17,538</td><td>20,344</td><td>44.0</td></tr><tr><td>소득세</td><td>328</td><td>862</td><td>787</td><td>709</td><td>691</td><td>19.2</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649	1,153	4,388	7,025	6,528	13,019	법인세	530	1,016	4,117	6,778	6,309	12,778	소득세	119	137	271	247	219	241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18,134	25,439	20,681	18,247	21,035	41.6	법인세	17,806	24,577	19,894	17,538	20,344	44.0	소득세	328	862	787	709	691	19.2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649	1,153	4,388	7,025	6,528	13,019																																																			
법인세	530	1,016	4,117	6,778	6,309	12,778																																																			
소득세	119	137	271	247	219	241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18,134	25,439	20,681	18,247	21,035	41.6																																																			
법인세	17,806	24,577	19,894	17,538	20,344	44.0																																																			
소득세	328	862	787	709	691	19.2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개정연혁 (시행령 개정 포함)	○ 1998.12.31: 일몰기한(1999.1.1 → 1999.6.30), 공제율 10% ○ 1999.6.30: 일몰연장(1999.6.30 → 1999.12.31), 공제율 10% ○ 2000.1.10: 일몰연장(1999.12.31 → 2000.6.30), 공제율 축소(10%→7%) ※ 적용중지: 2000.7.1~2000.12.31 ○ 2000.12.29: 적용개시(2001.1.1 → 2001.6.30), 공제율 10% ○ 2001.6.12: 일몰연장(2001.6.30 → 2001.12.31), 공제율 10% ○ 2001.8.14(법률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조기공제 제도 도입 ○ 2001.9.29 - 공제대상 업종 확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 추가 ○ 2001.12.31: 일몰연장(2001.12.31 → 2002.6.30), 공제율 10% ○ 2002.6.25: 일몰연장(2002.6.30 → 2002.12.31), 공제율 10% ○ 2002.12.30: 일몰연장(2002.12.31 → 2003.6.30), 공제율 10% ○ 2003.6.30: 일몰연장(2003.6.30 → 2003.12.31), 공제율 10% ○ 2003.12.30 - 일몰연장, 공제율 확대(법률개정) : 2003.7.1~2004.6.30까지 투자금액의 15% - 공제대상 업종 확대: 의료기관 운영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추가 ○ 2004.7.26(법률개정): 일몰연장(2004.6.30 → 2004.12.31), 공제율 15% ○ 2005.2.19: 일몰연장, 공제율 축소(2004.12.31 → 2005.12.31), 공제율 10% ○ 2006.2.9: 일몰연장, 공제율 축소(2005.12.31 → 2006.12.31), 공제율 7% ○ 2006.12.30: 일몰연장(2006.12.31 → 2007.12.31), 공제율 7% ○ 2008.3.10 - 일몰연장(2007.12.31 → 2008.12.31), 공제율 7% - 국내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공제적용 ○ 2008.10.7: 공제대상 업종 확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추가) ○ 2008.12.31 - 일몰연장(2008.12.31 → 2009.12.31), 공제율 10% - 공제대상에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내 투자 추가 :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 밀역제권역에 있는 경우(3%) ○ 2009.5.21(법률개정):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비율(10%, 시행령)을 임시투자세액 공제시 추가

⑱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신설연월일	○ 1997.8.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만기 15년 이상인 다음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4% 분리과세 ○ 감면대상 채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8조제1항)」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 －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해 발행된 지방채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사회간접자본채권 등 보유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저율분리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r><tr><td>소득세</td><td>0</td><td>0</td><td>0</td></tr></table> ※ 2001년 이후 감면세액 정보 없음					1998	1999	2000	소득세	0	0	0
	1998	1999	2000									
소득세	0	0	0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0.12.31까지 ○ 2000.12.29 － 일몰연장: 2000.12.31→2003.12.31 － 분리과세 세율 조정: 15%→ 14% － 감면대상 확대: 만기 15년 이상 ‘수해방지채권’ 추가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2009.12.31											

①9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2
신설연월일	○ 2008.9.26
감면내용	○ 감면내용: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사후관리: 1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	○ 신규도입으로 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8.12.28 - 제도도입

⑳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2								
신설연월일	○ 2004.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이상 보유)가 i)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ii)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 ○ 감면요건 －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를 것 － 제휴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 제휴법인의 주주 및 벤처기업이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2006</td><td>2007</td><td>2008^p</td></tr><tr><td>소득세·법인세</td><td>0</td><td>0</td><td>0</td></tr></table>		2006	2007	2008 ^p	소득세·법인세	0	0	0
	2006	2007	2008 ^p						
소득세·법인세	0	0	0						
주요 개정연혁	○ 2003.12.30 － 제도 도입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전략적 제휴 대상 벤처기업 범위 확대 : 비상장 벤처기업 외에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추가								

②①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3											
신설연월일	○ 2004.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보유주식을 다른 중소기업법인(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제외)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 ○ 감면요건 -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를 것 -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및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중소기업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중소기업법인의 주주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2006</th><th>2007</th><th>2008^P</th></tr><tr><td>소득세·법인세</td><td>0</td><td>0</td><td>0</td></tr></table>					2006	2007	2008 ^P	소득세·법인세	0	0	0
	2006	2007	2008 ^P									
소득세·법인세	0	0	0									
주요 개정연혁	○ 2004.12.31 - 제도 도입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②②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4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익금산입 ○ 감면 유지요건 - 다음의 요건 미비시 익금산입 ·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해 이후 3년 간 제3자 물류비용이 70%이상일 것 · 제3자 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 법인세율 × 연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제3자 물류비용: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제3자 위탁)한 물류비용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법인세
감면세액	○ 2008년: 법인세 0.5억원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 도입

②③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5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 46조제1항에 따른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의 특례를 허용 ○ 과세이연 요건의 완화 -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그 밖에 아래 「법인세법(46조제1항)」의 ②와 ③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 「법인세법」 46조제1항(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이상)이 주식일 것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과세이연방법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또는 상각시점까지 과세이연 ○ 적용배제: 분할법인과 분할합병 신설법인(신설분할합병인 경우)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흡수분할합병인 경우)이 특수관계인 경우는 특례 적용 배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법인세
감면세액	○ 2008년: 법인세 0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 도입

②④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6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시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 45조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허용 ○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일 것 (아래 법인세법 ③에 대한 특례) - 아래 법인세법 ①·②·④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을 갖출 것 - 1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 합병대가의 95%이상이 주식가액 -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일 것 ④ 합병법인이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것 단,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시에는 예외인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물류법인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기타(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감면세목	○ 법인세
감면세액	○ 2008년: 법인세 0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 도입

②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44조의3
신설연월일	○ 2003.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법인(벤처기업 포함)이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 45조의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허용 ○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사업영위기간 계산 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기산(아래 ①에 대한 특례)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일 것 (아래 ③에 대한 특례) - 아래 법인세법 ②·④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을 갖출 것 - 1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 합병대가의 95%이상인 주식가액 -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영위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일 것 ④ 합병법인이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구분경리할 것 단,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시에는 예외인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기타(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감면세목	○ 법인세
감면세액	○ 감면 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3.12.30 - 제도 도입 ○ 2006.12.30 - 일몰 신설: 2009.12.31까지

②⑥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51조의2
신설연월일	○ 2001.8.14
감면내용	○ 감면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초소득 발생연도 및 이후 5년간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금액의 50%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 2007·2008년: 0억원(감면실적 없음) ※ 제도 신설 후 2007년 이전 감면 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1.8.14 - 제도도입(감면내용):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특례(제1항),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세액감면(제3항),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한 거주자의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제5항) - 일몰기한: 2003.12.31까지 ○ 2001.12.29 - 감면확대: 부동산투자회사(현행,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도입(제4항) - 일몰종료(일부,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등 특별부가세 50% 감면 ○ 2003.12.30 - 일몰연장(일부, 제1항·제5항):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종료(일부, 제1항·제5항): 투자손실준비금 특례, 거주자의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폐지 - 일몰신설(일부, 제4항): 2009.12.31까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 임대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②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신설연월일	○ 1986.12.26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 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 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입주하여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농공단지 입주 내국인, 개발촉진지구·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 등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세액감면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계</td><td>96</td><td>42.4</td><td>75</td><td>53</td><td>51.4</td><td>57.7</td></tr><tr><td>법인세</td><td>78</td><td>28.5</td><td>59</td><td>42</td><td>43.2</td><td>53.5</td></tr><tr><td>소득세</td><td>18</td><td>13.9</td><td>16</td><td>11</td><td>8.2</td><td>4.2</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49</td><td>56</td><td>51</td><td>85</td><td>82</td><td>－1.6</td></tr><tr><td>법인세</td><td>43</td><td>49</td><td>47</td><td>84</td><td>81</td><td>0.4</td></tr><tr><td>소득세</td><td>6</td><td>7</td><td>4</td><td>1</td><td>1</td><td>－25.1</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96	42.4	75	53	51.4	57.7	법인세	78	28.5	59	42	43.2	53.5	소득세	18	13.9	16	11	8.2	4.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49	56	51	85	82	－1.6	법인세	43	49	47	84	81	0.4	소득세	6	7	4	1	1	－25.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96	42.4	75	53	51.4	57.7																																																			
법인세	78	28.5	59	42	43.2	53.5																																																			
소득세	18	13.9	16	11	8.2	4.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49	56	51	85	82	－1.6																																																			
법인세	43	49	47	84	81	0.4																																																			
소득세	6	7	4	1	1	－25.1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0.12.31까지) ○ 2000.12.29 － 일몰연장: 2000.12.31 → 2003.12.31 － 감면대상 확대: 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의 경우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축산업 영위하는 내국인 추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감면기간 축소: 입주 후 6년간 → 4년간 ○ 2006.12.30: 일몰연장(2006.12.31 → 2009.12.31)																																																								

②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3조																																																								
신설연월일	○ 1989.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농업소득*: 전액 면제 * 작물재배업소득(벼, 과실, 채소 등) $*1,200 \times \times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 － 농업소득 외의 소득: 다음 한도*내에서 면제 2)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 농업소득: 비과세 － 농업소득 외의 소득: 1,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는 5% 분리과세 3)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 농업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저율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계</td><td>20</td><td>68</td><td>42</td><td>51</td><td>72.5</td><td>86.9</td></tr><tr><td>법인세</td><td>19</td><td>67.3</td><td>42</td><td>50.7</td><td>71.2</td><td>83</td></tr><tr><td>소득세</td><td>1</td><td>0.7</td><td>0.02</td><td>0.3</td><td>1.3</td><td>3.9</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105</td><td>138</td><td>145</td><td>186</td><td>327</td><td>32.2</td></tr><tr><td>법인세</td><td>95</td><td>135</td><td>138</td><td>165</td><td>188</td><td>25.8</td></tr><tr><td>소득세</td><td>10</td><td>3</td><td>7</td><td>21</td><td>139</td><td>63.8</td></tr></table> * 2007·2008 감면세액 중 소득세에는 영어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과세감면액이 일부 포함된 수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0	68	42	51	72.5	86.9	법인세	19	67.3	42	50.7	71.2	83	소득세	1	0.7	0.02	0.3	1.3	3.9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105	138	145	186	327	32.2	법인세	95	135	138	165	188	25.8	소득세	10	3	7	21	139	63.8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0	68	42	51	72.5	86.9																																																			
법인세	19	67.3	42	50.7	71.2	83																																																			
소득세	1	0.7	0.02	0.3	1.3	3.9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105	138	145	186	327	32.2																																																			
법인세	95	135	138	165	188	25.8																																																			
소득세	10	3	7	21	139	63.8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②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4조																																																								
신설연월일	○ 1997.12.13																																																								
감면내용	○ 감면내용 : *1,200 ×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 면제 2)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 1,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는 5% 분리과세 3) 어업인이 어업용토지를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영어조합법인과 조합원, 어업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저율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td></tr><tr><td>계</td><td>47.6</td><td>13.7</td><td>4.1</td><td>5.4</td><td>6.9</td><td>—</td></tr><tr><td>법인세</td><td>47.6</td><td>13.7</td><td>4.1</td><td>5.4</td><td>6.9</td><td>—</td></tr><tr><td>소득세</td><td>0.0</td><td>0.0</td><td>0.0</td><td>0.0</td><td>0.0</td><td>—</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계</td><td>6</td><td>9</td><td>8</td><td>11</td><td>13</td><td>—13.4</td></tr><tr><td>법인세</td><td>6</td><td>9</td><td>7.5</td><td>10</td><td>12</td><td>—14.2</td></tr><tr><td>소득세</td><td>0</td><td>0</td><td>0.5</td><td>1</td><td>1</td><td>—</td></tr></table>		1999	2000	2001	2002	2003	—	계	47.6	13.7	4.1	5.4	6.9	—	법인세	47.6	13.7	4.1	5.4	6.9	—	소득세	0.0	0.0	0.0	0.0	0.0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6	9	8	11	13	—13.4	법인세	6	9	7.5	10	12	—14.2	소득세	0	0	0.5	1	1	—
	1999	2000	2001	2002	2003	—																																																			
계	47.6	13.7	4.1	5.4	6.9	—																																																			
법인세	47.6	13.7	4.1	5.4	6.9	—																																																			
소득세	0.0	0.0	0.0	0.0	0.0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6	9	8	11	13	—13.4																																																			
법인세	6	9	7.5	10	12	—14.2																																																			
소득세	0	0	0.5	1	1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③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																																																								
신설연월일	○ 1989.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감면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50%의 세액감면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3)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 농업소득: 비과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 14% 분리과세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세액감면 등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계</td><td>0.4</td><td>1.3</td><td>4.8</td><td>5.1</td><td>12.8</td><td>14.1</td></tr><tr><td>법인세</td><td>0.4</td><td>1.2</td><td>4.6</td><td>5.1</td><td>12.8</td><td>14.1</td></tr><tr><td>소득세</td><td>0.0</td><td>0.1</td><td>0.2</td><td>0.0</td><td>0.0</td><td>0.0</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계</td><td>9</td><td>28</td><td>62</td><td>35</td><td>30</td><td>54.0</td></tr><tr><td>법인세</td><td>9</td><td>28</td><td>62</td><td>35</td><td>30</td><td>54.0</td></tr><tr><td>소득세</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0.4	1.3	4.8	5.1	12.8	14.1	법인세	0.4	1.2	4.6	5.1	12.8	14.1	소득세	0.0	0.1	0.2	0.0	0.0	0.0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9	28	62	35	30	54.0	법인세	9	28	62	35	30	54.0	소득세	0	0	0	0	0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0.4	1.3	4.8	5.1	12.8	14.1																																																			
법인세	0.4	1.2	4.6	5.1	12.8	14.1																																																			
소득세	0.0	0.1	0.2	0.0	0.0	0.0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9	28	62	35	30	54.0																																																			
법인세	9	28	62	35	30	54.0																																																			
소득세	0	0	0	0	0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감면확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농업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 농업 외 소득: 14% 분리과세)																																																								

③ - 1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개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등																																		
신설연월일	○ 2001.12.29(조특법)																																		
감면내용	○ 기부금 공제(손비인정)한도 1) 법정기부금(소득세법§52⑥): 종합소득금액의 100% 2) 특례기부금(조특법§73):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합계) × 50% 3) 지정기부금(소득세법§52⑥) ① 종교단체 기부금액 있는 경우 ： 소득금액 × 10% + min[소득금액 × 10%('09말까지 5%), 종교단체 외 지급금액] ② 종교단체 기부금액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20%('09말까지 15%) ○ 공제(손비인정)대상 기부금 1) 법정기부금(소득세법§34②): 국가 또는 지자체 기증액, 국방헌금·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기능대학·산학협력단·사립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대한적십자사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 무료 또는 실비 이용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등 2) 특례기부금(조특법§73):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원·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3) 지정기부금(소득세법§80①): 사회복지법인·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학술연구단체·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등 ○ 특례기부금(조특법§73)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거주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소득세</td><td>1,163</td><td>1,164</td><td>1,194</td><td>2,986</td><td>4,022</td><td>4,702</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소득세</td><td>4,448</td><td>5,067</td><td>5,045</td><td>6,054</td><td>8,309</td><td>21.7</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1,163	1,164	1,194	2,986	4,022	4,70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4,448	5,067	5,045	6,054	8,309	21.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1,163	1,164	1,194	2,986	4,022	4,702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4,448	5,067	5,045	6,054	8,309	21.7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개정연혁	○ 2000.10.23 - 공제대상자 확대(소득§52): 근로소득자 → 거주자 - 무료·실비운영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전액공제 - 기타 공익성 기부금 공제한도 인상 : (종합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 10%) 공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 2001.12.29: 특례기부금(조특§73)에 대하여 비사업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허용 ○ 2005.12.31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 한국 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 2006.12.30 - 특례기부금 과세특례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특례기부금 과세특례 범위조정 · 감면대상 확대: 지방의료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및 빈곤층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한국한의 학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국립암센터에 대하여 다른 특례기부금 대상병원과 동일하게 그 용도를 시설비 등으로 한정 - 일몰종료(폐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한도 특례(일반 지정기부금단 체와 같이 소득금액의 5%한도로 일원화), 근로복지공단이 (재)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 2007.12.31 -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 §34·52): 소득금액의 10% → 15%('08년), 20%('10년), 단 종교단체는 사후관리방안 마련될 때까지 현행 유지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 §34·52) : 거주자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조특 §73):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기부 추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유물·미술품 기부 추가 - 사회적환원기부신탁 신설(조특 §73)

③1 - 2 기부금의 손금산입(법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신설연월일	○ ○ 1981.12.31(조감법)																												
감면내용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1)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06~' 08: 100%, '09년부터 50% * 특례기부금 중 법인이 대학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100%(2010년까지) 2) 지정기부금: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지출액 - 이월결손금) × 5% ○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1)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 무상 기증액, 국방헌금·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2) 특례기부금: 사립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액, 사내 근로복지기금, 특정연구기관·한국생산기술원, 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 국제교류재단,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3) 지정기부금: 무료 또는 실비 이용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유치원·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사회복지·종교·교육·문화 등 관련 법인, 이재민·국군장병 등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손금산입																												
감면세목	○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법인세</td><td>3,663</td><td>1,891</td><td>4,417</td><td>4,270</td><td>3,551</td><td>4,083</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법인세</td><td>4,530</td><td>5,295</td><td>5,390</td><td>6,670</td><td>7,735</td><td>7.8</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3,663	1,891	4,417	4,270	3,551	4,083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4,530	5,295	5,390	6,670	7,735	7.8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3,663	1,891	4,417	4,270	3,551	4,083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4,530	5,295	5,390	6,670	7,735	7.8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특례기부금(조특§73) 과세특례 일몰신설: 2000.12.31까지 ○ 2000.12.29 -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2000.12.31 → 2003.12.31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100% → 50%, 한도초과 기부금 3년간 이월 공제 허용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국립암센터, 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 분	주요 내용
	○ 2002.12.11: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제도 폐지 ○ 2003.12.30 -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사립학교의 신·증설,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제도 재신설 ○ 2004.10.5 -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 지원확대(조특§73)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 손금산입확대 : 소득금액 50% → 100%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 소득금액 5% → 8%(2006.12.31까지) ○ 2005.12.31 - 법정기부금 비용인정한도 단계적 축소(법인§24) : 소득금액의 100%→75%('08년까지)→ 50%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 소득금액 100% → 50% - 법정,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단축(3년간 → 1년간)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등 기부금 손비인정범위 확대 : 5% → 50%('08년까지 75%), 조문 법인세법(제24조) 이관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 2006.12.30 - 특례기부금 특례(조특§73) 일몰연장 : 2006.12.31 → 2009.12.31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및 범위 조정(조특§73)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지방의료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특례기부금범위 조정: 국립암센터에 대하여 다른 특례기부금 대상병원과 동일하게 그 용도를 시설비 등으로 한정 - 일몰종료(폐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기부금 한도 특례(일반 지정기부금 단체와 같이 소득금액의 5%한도로 일원화), 근로복지공단 이 (재)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 2007.12.31 -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조특 §73):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기부 추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유물·미술품 기부 추가 ○ 2008.12.26 - 법인이 대학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2년간(2010년 말까지)한시적으로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③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0조																												
신설연월일	○ 1976.12.22																												
감면내용	○ 감면내용 1) 다음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제1항)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문화예술단체 '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등 2)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관리·운용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제3항)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도서관, 박물관운영법인 등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준비금																												
감면세목	○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법인세</td><td>871</td><td>993</td><td>1,409</td><td>4,077</td><td>1,972</td><td>2,101</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법인세</td><td>691</td><td>802</td><td>758</td><td>874</td><td>1,195</td><td>3.2</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871	993	1,409	4,077	1,972	2,101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691	802	758	874	1,195	3.2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법인세	871	993	1,409	4,077	1,972	2,101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691	802	758	874	1,195	3.2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3.12.31까지) ○ 2000.5.24 - 연기금의 수익사업소득 중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제3항) ○ 2001.12.29: 감면대상 확대(평생교육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추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감면대상 확대: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추가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감면대상 확대: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추가 ○ 2008.12.26 - 감면대상 확대: 국제행사 조직위원회('12년 여수세계박람회, '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추가																												

③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2조																																																								
신설연월일	○																																																								
감면내용	○ 감면내용: 공공사업용 토지, 도시개발용 토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 현금보상분: 20% － 채권보상분: 25% － 만기보유특약 채권보상분: 30%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계</td><td>2,563</td><td>1,409</td><td>706</td><td>499</td><td>63.2</td><td>4.7</td></tr><tr><td>소득세</td><td>1,898</td><td>1,253</td><td>660</td><td>458</td><td>26.7</td><td>4.7</td></tr><tr><td>법인세</td><td>665</td><td>156</td><td>46</td><td>41</td><td>36.5</td><td>0</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9</td><td>2</td><td>80</td><td>465</td><td>1,297</td><td>-6.6</td></tr><tr><td>소득세</td><td>9</td><td>2</td><td>80</td><td>465</td><td>1,297</td><td>-3.7</td></tr><tr><td>법인세</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563	1,409	706	499	63.2	4.7	소득세	1,898	1,253	660	458	26.7	4.7	법인세	665	156	46	41	36.5	0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9	2	80	465	1,297	-6.6	소득세	9	2	80	465	1,297	-3.7	법인세	0	0	0	0	0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2,563	1,409	706	499	63.2	4.7																																																			
소득세	1,898	1,253	660	458	26.7	4.7																																																			
법인세	665	156	46	41	36.5	0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9	2	80	465	1,297	-6.6																																																			
소득세	9	2	80	465	1,297	-3.7																																																			
법인세	0	0	0	0	0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0.12.31까지) ○ 2000.12.29: 일몰연장(2000.12.31 → 2003.12.31) ○ 2001.12.29 － 감면을 축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25%(채권보상분 35%) 감면 → 채권보상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10% 감면 * 2002년부터 특별부가세 폐지 ○ 2003.12.30: 일몰연장(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감면확대: 현금보상분도 감면(10%), 채권보상분 감면을 확대(10%→15%) ○ 2007.12.31: 만기보유특약 채권보상분 감면을 확대(15%→20%) ○ 2008.12.26 － 감면을 확대: 현금보상분: 10%→20%, 채권보상분: 15%→25%, 만기보유특약 채권보상분: 20%→30%																																																								

③④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73조
신설연월일	○ 2007.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으로 지급받는 분(대토보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대토의 양도시점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감면요건 － 피보상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등 － 사업시행자: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 ○ 사후관리 －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대토보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소득세
감면세액	○ 2008년: 소득세 0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7.12.31 － 제도도입 * 적용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보상 분(2007.10.17 이후 최초 양도 분)부터 적용

③⑤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79조의3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내국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수용·협의매수 된 공장(대지와 건물)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광역시 제외)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 1) 내국법인: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2) 거주자: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2. 행정중심도시·혁신도시 밖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일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 공장 사업영위자
감면방법	○ 직접·간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 과세이연
감면세목	○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	○ 2008년: 법인세 0.4억원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도입 ○ 2007.12.31 – 감면대상 확대: 혁신도시 추가 ○ 2008.12.26 – 감면내용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밖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③⑥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79조의4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1. 기업도시 참여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이연(제1·2항) 1) 기업도시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SPC)에게 기업도시구역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2) 기업도시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로 반환하는 경우 － 분양받은 토지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도시 참여 내국법인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4항) － 내국법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 * 법인세법 §36①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압축기장총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기업도시 참여 내국법인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법인세
감면세액	○ 2008년: 법인세 0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도입 ○ 2008.12.26 － 감면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도시 참여 내국법인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4항) 신설

③⑦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79조의5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현물출자대상법인)*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 현물출자대상법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법인세
감면세액	○ 2008년: 법인세 0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도입

③⑧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79조의6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 - 법인: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개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 사후관리 - 과세이연 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직장보육시설 운영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	○ 2008년도: 0억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도입

㉔ 공익사업 수용 등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및 동 법 시행령 제79조의8
신설연월일	○ 2007.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 1) 법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 개인: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 감면요건 -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 이전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제외(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가능) ○ 사후관리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다액 추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소득세
감면세액	○ 2008년: 소득세 0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7.12.31 - 제도도입

④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1조																												
신설연월일	○ 1994.1.1																												
감면내용	1. 장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1항) ○ 감면 대상 및 요건 - 무주택이거나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의 18세 이상 세대주 - 저축불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 감면내용: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사후관리: 가입일부터 7년 이내 원금·이자 인출 또는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2.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제2항) ○ 공제 대상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감면 대상 및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당시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 후 주택 취득시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공제내용 및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택마련저축: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000만원 ○ 사후관리: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1년 이내 해지시 저축불입액의 8%(60만원 한도) 감면세액 추징																												
수혜자	○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85m3이하 1주택소유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소득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소득세</td><td>69</td><td>57</td><td>52</td><td>36</td><td>102</td><td>147</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P</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소득세</td><td>243</td><td>284</td><td>377</td><td>382</td><td>—</td><td>20.9</td></tr></table> * 2008년도 감면세액은 2008년 조세지출보고서부터 각종 저축·투자지원 항목들을 이자 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항목으로 통합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음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2008년도 소득세법에서 이관)는 제외된 금액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69	57	52	36	102	147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243	284	377	382	—	20.9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득세	69	57	52	36	102	147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연평균증가율																							
소득세	243	284	377	382	—	20.9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1999.8.31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추정세액 한도 인상 : 연간 7만2천원 → 18만원 ○ 2000.12.29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추정요건 강화 · 5년 이내 해지시 추정세액한도 인상: 저축불입액의 4%(한도 18만원 → 30만원) · 1년 이내 해지시 추정세액 가중: 저축불입액의 8%(60만원 한도)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감면내용 확대: 이자소득 비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 추가 ○ 2007.12.31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2항) 조항 이관 － 가입요건 보완 ·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 1채 소유 요건여부를 세대주에게 적용하던 것을 세대 전체에 적용 · 최초 가입 7년 후, 이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④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의2
신설연월일	○ 1999.8.31
감면내용	1. 투자회사의 국내 상장주식 등의 평가·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제1항) ○ 감면내용: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다음 주식의 평가·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 코스닥 시장 등록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 집합투자기구 등의 국외상장주식 평가·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제2항) ○ 감면내용: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국외상장주식의 평가·양도차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거주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감면세액	○ 2006년도: 소득세 0원(그 밖의 연도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 1999.8.31 - 제도도입(일몰기한: 2001.12.31까지) ○ 2000.12.29 - 감면대상 축소: 비과세대상에 상장·등록 유가증권 중 「소득세법(\$46①)」에 따른 채권 등 제외 - 감면대상 확대: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 추가 - 일몰규정 삭제 ○ 2004.12.31 - 감면대상 기관 추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 감면대상 축소: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삭제 ○ 2007.6.1 - 국내투자회사·투자신탁으로부터의 분배금 중 국외상장주식 분배금 추가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④② 고수익·고위험 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의6
신설연월일	○ 200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5% 저율 분리과세 *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의 요건 (시행령): 고수익고위험 채권 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 이상, 국내채권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이고, 국내자산에만 투자 ○ 감면대상 소득 및 감면한도 － 거주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하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배당소득, 한도 없음 ○ 감면(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저율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제도 도입 ○ 2007.12.31 － 감면확대: 거주자가 가입하는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저율과세

④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의8
신설연월일	○ 2008.12.26
감면내용	○ 감면내용: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분을 소득공제하고, 동 가입일로부터 3년간 해당 불입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율: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감면대상 장기주식형저축 요건 -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투자회사·투자신탁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저축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가입 합계액) ○ 사후관리 -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거주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비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신규 도입)
주요 개정연혁	○ 2008.12.26 - 제도도입 - 적용: 2008.10.20이후 최초 가입 저축 분부터

④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의9
신설연월일	○ 2008.12.26
감면내용	○ 감면내용: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 거치식으로 가입하여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동 가입일로부터 3년간 당해 불입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 감면대상 장기채권형저축 요건 -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투자회사·투자신탁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저축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 가입 합계액) ○ 사후관리 -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거주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신규 도입)
주요 개정연혁	○ 2008.12.26 - 제도도입 - 적용: 2008.10.20이후 최초 가입 저축분부터

④⑤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의10
신설연월일	○ 2009.3.25
감면내용	○ 감면내용: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 - 투자금액 1억원 이하: 비과세 - 투자금액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총액 중 다음의 자산가액이 70% 이상인 것 ·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소유권 · 미분양주택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 예외적 적용 -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감면적용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가입분
수혜자	○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분리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신규도입)
주요 개정연혁	○ 2009.3.25 - 제도 도입 ○ 2009.5.21 - 감면대상 확대: 거주자 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추가

④⑥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4조																																																								
신설연월일	○ 1982.12.2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취득(신축 또는 구입 포함)한 경우 －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시설 부수토지의 매입대금 제외)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대상 시설 －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직장보육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시설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분																																																								
수혜자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등을 취득한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세액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8</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r><tr><td>계</td><td>136.2</td><td>52.3</td><td>141.6</td><td>34.4</td><td>50.2</td><td>31.4</td></tr><tr><td>법인세</td><td>136</td><td>52.1</td><td>141.6</td><td>34.1</td><td>50</td><td>31.3</td></tr><tr><td>소득세</td><td>0.2</td><td>0.2</td><td>0.0</td><td>0.3</td><td>0.2</td><td>0.1</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39</td><td>68</td><td>95</td><td>110</td><td>148</td><td>0.8</td></tr><tr><td>법인세</td><td>39</td><td>68</td><td>95</td><td>110</td><td>148</td><td>0.8</td></tr><tr><td>소득세</td><td>0.1</td><td>0.2</td><td>0.1</td><td>0.3</td><td>0.1</td><td>－</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36.2	52.3	141.6	34.4	50.2	31.4	법인세	136	52.1	141.6	34.1	50	31.3	소득세	0.2	0.2	0.0	0.3	0.2	0.1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39	68	95	110	148	0.8	법인세	39	68	95	110	148	0.8	소득세	0.1	0.2	0.1	0.3	0.1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36.2	52.3	141.6	34.4	50.2	31.4																																																			
법인세	136	52.1	141.6	34.1	50	31.3																																																			
소득세	0.2	0.2	0.0	0.3	0.2	0.1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39	68	95	110	148	0.8																																																			
법인세	39	68	95	110	148	0.8																																																			
소득세	0.1	0.2	0.1	0.3	0.1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0.12.31까지) ○ 2000.12.29: 일몰연장(2000.12.31 → 2003.12.31) ○ 2002.12.11 － 사후관리 규정 도입: 감면 후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공제율 확대: 3% → 7% ○ 2006.12.30: 일몰연장(2006.12.31 → 2009.12.31)																																																								

④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신설연월일	○ 2009.3.25
감면내용	○ 감면내용: 거주자(임원 제외)가 2009.12.31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30%를 세액에서 공제 ○ 감면한도: 근속연수 × 24만원 ○ 감면제한(시행령)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임원 제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신규 도입)
주요 개정연혁	○ 2009.3.25 - 제도 도입

④⑧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0조										
신설연월일	○ 1988.1.1										
감면내용	○ 감면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2·10)」에 따른 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 사업주: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 근로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 손금산입 한도 - 취득자금: 취득가액의 5% - 임차자금: 임차금액의 10% ○ 일몰기한: 2009.12.31										
수혜자	○ 무주택근로자 및 사업주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손금산입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9~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r><tr><td>소득세</td><td>추정곤란</td><td>0.17</td><td>0.15</td><td>0.15</td></tr></table>		1999~2005	2006	2007	2008 ^P	소득세	추정곤란	0.17	0.15	0.15
	1999~2005	2006	2007	2008 ^P							
소득세	추정곤란	0.17	0.15	0.15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이관 * 1999년 이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주택임대용 토지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제2항) 삭제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④9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신설연월일	○ 2004.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중소기업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상속·증여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과세율 적용을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상 할증 과세율 - 지분율 50% 이상: 30%(중소기업 15%) - 지분율 50% 미만: 20%(중소기업 10%)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상속·증여받는 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기타
감면세목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4.12.31 - 제도도입(일몰기한: 2006.12.31까지) ○ 2006.12.31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⑤⑩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2조																																																								
신설연월일	○ 1965.12.20 *1994.7.1부터 이전 소득세·법인세 비과세에서 50% 세액감면 제도로 변경																																																								
감면내용	○ 감면내용: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 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을 감면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산림 등을 10년 이상 조림한 내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계</td><td>0.3</td><td>0.6</td><td>0.04</td><td>4.8</td><td>0.1</td><td>0.1</td></tr><tr><td>소득세</td><td>0.2</td><td>0.3</td><td>0.04</td><td>4.8</td><td>0.1</td><td>0.1</td></tr><tr><td>법인세</td><td>0.1</td><td>0.3</td><td>0</td><td>0</td><td>0</td><td>0</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td></tr><tr><td>계</td><td>0.1</td><td>0.01</td><td>1</td><td>0.02</td><td>0.02</td><td>—</td></tr><tr><td>소득세</td><td>0.1</td><td>0.01</td><td>0.02</td><td>0.02</td><td>0.02</td><td>—</td></tr><tr><td>법인세</td><td>0</td><td>0</td><td>1.0</td><td>0</td><td>0</td><td>—</td></tr></tabl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0.3	0.6	0.04	4.8	0.1	0.1	소득세	0.2	0.3	0.04	4.8	0.1	0.1	법인세	0.1	0.3	0	0	0	0		2004	2005	2006	2007	2008 ^P	—	계	0.1	0.01	1	0.02	0.02	—	소득세	0.1	0.01	0.02	0.02	0.02	—	법인세	0	0	1.0	0	0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0.3	0.6	0.04	4.8	0.1	0.1																																																			
소득세	0.2	0.3	0.04	4.8	0.1	0.1																																																			
법인세	0.1	0.3	0	0	0	0																																																			
	2004	2005	2006	2007	2008 ^P	—																																																			
계	0.1	0.01	1	0.02	0.02	—																																																			
소득세	0.1	0.01	0.02	0.02	0.02	—																																																			
법인세	0	0	1.0	0	0	—																																																			
주요 개정연혁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⑤1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신설연월일	○ 1999.12.28																								
감면내용	1. 어업협정에 따른 지원금 비과세 ○ 감면내용: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어업협정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는 다음의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제1항) － 어업자 등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 어장의 이동·업종전환에 따른 어구의 감정가 매입지원금(§4①) － 어선원이 지급받는 실업지원금(§5①)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보조금 익금불산입(제2항) ○ 감면내용 － 어업자등이 '어업협정 특별법(§4③)'에 따라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어업보조금) 익금불산입 －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손금 불산입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인 등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과세이연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r><tr><td>소득세</td><td>0</td><td>417</td><td>28.6</td><td>422</td><td>누락</td></tr><tr><td></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td></tr><tr><td>소득세</td><td>누락</td><td>0</td><td>0</td><td>0</td><td>－</td></tr></table> ※ 법인세 감면실적 없음, 2003년도 세액(422억원)은 전망치임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0	417	28.6	422	누락		2005	2006	2007	2008 ^p	－	소득세	누락	0	0	0	－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0	417	28.6	422	누락																				
	2005	2006	2007	2008 ^p	－																				
소득세	누락	0	0	0	－																				
주요 개정연혁	○ 1999.12.28 － 제도도입 － 적용시기: 1999년도 지급 또는 보조받는 분부터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⑤2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신설연월일	○ 2009.3.25
감면내용	○ 감면내용: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1년 이내에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이연 － 출자금액을 잔여재산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 처분시 또는 신용회복기금 해산시 전액 익금산입 * 제도 도입경위 － 2008.12.29 자산관리공사(KAMCO)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0.7조원)을 금융기관에 분배 － 2009.1.5 금융기관은 분배금중 법인세상당액(0.2조원)을 제외한 0.5조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자 － 해당 법인세(0.2조원)액에 대하여 과세이연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는 금융기관
감면방법	○ 간접감면(직접세) - 과세이연
감면세목	○ 법인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신규도입)
주요 개정연혁	○ 2009.3.25 － 제도도입

⑤③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신설연월일	○ 1979.12.28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공사(지자체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국가·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민간투자사업시행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 colspan="2">－</td></tr><tr><td>부가가치세</td><td>2,363</td><td>2,747</td><td>2,306</td><td>1,607</td><td>3,309</td><td colspan="2">－</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 colspan="2">연평균증가율</td></tr><tr><td>부가가치세</td><td>2,784</td><td>2,010</td><td>1,504</td><td>2,531</td><td>1,624</td><td colspan="2">－4.1</td></tr></table>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2,363	2,747	2,306	1,607	3,309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2,784	2,010	1,504	2,531	1,624	－4.1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2,363	2,747	2,306	1,607	3,309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2,784	2,010	1,504	2,531	1,624	－4.1																																	
주요 개정연혁	○ 2004.12.31: 감면대상 확대 －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7)」에 의한 사업시행자 추가 ○ 2005.7.13 － 영세율 적용대상 중 부산교통공단 삭제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⑤4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																												
신설연월일	○ 1999.12.28																												
감면내용	○ 감면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7)」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음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방식) -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일정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BTL 방식) -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 인정, 기간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wn－Transfer), BTL(Build－Transfer－Lease)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td></tr><tr><td>부가가치세</td><td>3</td><td>4</td><td>5</td><td>4</td><td>4.5</td><td>－</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부가가치세</td><td>247</td><td>0</td><td>4,747</td><td>2,497</td><td>2,783</td><td>113.7</td></tr></table> * 1999년도 감면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3	4	5	4	4.5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247	0	4,747	2,497	2,783	113.7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3	4	5	4	4.5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247	0	4,747	2,497	2,783	113.7																							
주요 개정연혁	○ 1999.12.28 - 제도도입(감면방식 변경), 적용: 2000.1.기부채납분부터 * SOC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방식 - 종전) 기부채납단계(과세) - 사용수익단계(면세) - 변경후) 기부채납단계(영세율) - 사용수익단계(과세) ○ 2005.7.13 - 감면대상 확대: BTL방식 추가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⑤4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1호																																																																						
신설연월일	○ 1977.12.19																																																																						
감면내용	○ 감면내용: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도서지방 거주자 등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등 면제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특별세·개별소비세, 교육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h>—</th></tr><tr><td>계</td><td>30.1</td><td>22</td><td>22.5</td><td>28</td><td>29.5</td><td>—</td></tr><tr><td>부가가치세</td><td>3.1</td><td>5.2</td><td>4.9</td><td>5.6</td><td>5.8</td><td>—</td></tr><tr><td>교통세</td><td>27</td><td>16.8</td><td>17.6</td><td>22.4</td><td>23.7</td><td>—</td></tr><tr><td>특소세·교육세</td><td>0</td><td>0</td><td>0</td><td>0</td><td>0</td><td>—</td></tr><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가율</th></tr><tr><td>계</td><td>549</td><td>25</td><td>29</td><td>38</td><td>34</td><td>1.4</td></tr><tr><td>부가가치세</td><td>50</td><td>6</td><td>6</td><td>7</td><td>8</td><td>11.1</td></tr><tr><td>교통세</td><td>497</td><td>19</td><td>20</td><td>24</td><td>22</td><td>-2.2</td></tr><tr><td>특소세·교육세</td><td>2</td><td>—</td><td>3</td><td>7</td><td>4</td><td>—</td></tr></table> * 특소세·교육세 중 1999-2004는 특별소비세 감면액, 2006-2008은 교육세감면액		1999	2000	2001	2002	2003	—	계	30.1	22	22.5	28	29.5	—	부가가치세	3.1	5.2	4.9	5.6	5.8	—	교통세	27	16.8	17.6	22.4	23.7	—	특소세·교육세	0	0	0	0	0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549	25	29	38	34	1.4	부가가치세	50	6	6	7	8	11.1	교통세	497	19	20	24	22	-2.2	특소세·교육세	2	—	3	7	4	—
	1999	2000	2001	2002	2003	—																																																																	
계	30.1	22	22.5	28	29.5	—																																																																	
부가가치세	3.1	5.2	4.9	5.6	5.8	—																																																																	
교통세	27	16.8	17.6	22.4	23.7	—																																																																	
특소세·교육세	0	0	0	0	0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계	549	25	29	38	34	1.4																																																																	
부가가치세	50	6	6	7	8	11.1																																																																	
교통세	497	19	20	24	22	-2.2																																																																	
특소세·교육세	2	—	3	7	4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⑤⑤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13항
신설연월일	○ 1982.12.2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의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공장·광산·건설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에게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 - 학교(대학교 포함)의 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공장, 건설사업현장 근로자 및 학생 등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 1999년 ~ 2008년: 추정곤란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⑤6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
신설연월일	○ 1989.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의 범위(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8·29)」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 「수산업법(§10)」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 1999년 ~ 2008년: 추정곤란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⑤7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						
신설연월일	○ 1999.8.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등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0	1.1	15.6	57.6	90.5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38	90	135	58	76	25.4
* 2001년부터 연평균증가율							
주요 개정연혁	○ 1999.8.31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⑤⑧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10
신설연월일	○ 2007.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중고금제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고금(중고금제품):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취득가액 인정한도: 고금 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영수증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 허용 - 매입자별계산서합계표 제출 ○ 고금 수취 대상자(시행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포함) - 간이과세자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중고금제품(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기타(매입세액공제 특례)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신규 도입)
주요 개정연혁	○ 2007.12.31 - 제도도입 - 시행일: 2008.7.1부터

㉟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신설연월일	○ 1992.12.8																												
감면내용	○ 감면내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자체 또는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6분의 6 - 중고품: 취득가액의 110분의 10 ○ 재활용 폐자원의 공제한도: 공급가액의 80%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기타(매입세액공제 특례)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td></tr><tr><td>부가가치세</td><td>1,489</td><td>1,965</td><td>2,299</td><td>3,045</td><td>3,497</td><td>—</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부가가치세</td><td>4,464</td><td>5,018</td><td>5,846</td><td>5,243</td><td>5,818</td><td>16.3</td></tr></table>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1,489	1,965	2,299	3,045	3,497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4,464	5,018	5,846	5,243	5,818	16.3
	1999	2000	2001	2002	2003	—																							
부가가치세	1,489	1,965	2,299	3,045	3,497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부가가치세	4,464	5,018	5,846	5,243	5,818	16.3																							
주요 개정연혁	○ 2005.7.13 -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에서 규정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108분의 8), 중고품(110분의 10)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취득가액의 8/108 → 6/106 : 공급가액의 80%(’07말까지 90%) 한도 내에서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허용																												

⑥⑩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1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신설연월일	○ 2009.5.21
감면내용	○ 감면내용: 19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중고자동차 제외; 이하 노후자동차)를 2009.4.12 현재 보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동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 후 승용자동차(신차)를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 －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 각각 70% 감면 ○ 감면상한: 개별소비세(100만원), 취득세(28만원), 등록세(70만원) －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 * 총 세금 경감한도: 차량당 250만 1,000원 (국세 143만원, 지방세 107만 1,000원) － 국세: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 지방세: 취득세(28만원), 등록세(70만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경감에 따라 부수되는 취득·등록세 경감한도(9만 1,000원) ○ 감면기간: 2009.5.1부터 2009.12.31까지
수혜자	○ 노후자동차를 폐차 양도 후 신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감면방법	○ 간접세 및 지방세 감면
감면세목	○ 개별소비세, 취득세·등록세 등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신규도입)
주요 개정연혁	○ 2009.5.21 － 제도도입 － 부대의견(대안 첨부):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전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

⑥1 경형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2
신설연월일	○ 2008.3.28
감면내용	○ 감면내용 - 「자동차관리법(§3)」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 ○ 환급대상(요건) -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3)」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환급세액 - 휘발유·경유 차량: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 석유가스(LPG) 중 부탄: 개별소비세액의 전액 ○ 환급 한도(시행령): 연간 10만원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경형자동차 소유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개별소비세·감면
감면세목	○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신규도입) * 2008년도 소형화물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액(잠정): 2,600억원
주요 개정연혁	○ 2008.3.28 - 제도도입, 시행일: 2008.5.1부터 ○ 2008.9.26 - 감면대상 확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추가, 감면기한: 2008.10.1부터 2009.6.30까지 - 감면내용 축소: 휘발유·경유차량 환급세액(리터당 300원 → 250원) ○ 2009.6.30 - 일몰종료(일부):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⑥2 농협 등의 당해 조합원 용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연월일	○ 1970.1.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 포함)이 당해 조합(어촌계 포함)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대하여 인지세 면제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 감면한도: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 5천만원 이하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농협 등 조합과 그 조합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인지세</td><td>107</td><td>150</td><td>299</td><td>134</td><td>121</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P</td><td>2008^P</td></tr><tr><td>인지세</td><td>86</td><td>77</td><td>76</td><td>63</td><td>－</td></tr></table>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107	150	299	134	121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인지세	86	77	76	63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107	150	299	134	121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인지세	86	77	76	63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0.12.31까지 ○ 1999.12.28 － 일몰연장: 2000.12.31 → 2003.12.31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⑥③ 농협 등의 조합원 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6호																								
신설연월일	○ 1973.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의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어린이예금통장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업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어촌계의 계원 포함)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농협 등 조합과 그 조합원, 취학아동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인지세</td><td>0.8</td><td>7.9</td><td>8.3</td><td>8.2</td><td>8.2</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p</td><td>2008^p</td></tr><tr><td>인지세</td><td>7</td><td>6</td><td>7</td><td>8</td><td>－</td></tr></table>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0.8	7.9	8.3	8.2	8.2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인지세	7	6	7	8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0.8	7.9	8.3	8.2	8.2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인지세	7	6	7	8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0.12.31까지 ○ 1999.12.28 － 일몰연장: 2000.12.31 → 2003.12.31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⑥4 농어촌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문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7호																								
신설연월일	○ 1973.12.2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감면대상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농어민, 농업기반공사, 시공사(건설사) 등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인지세</td><td>8.4</td><td>4.3</td><td>14.5</td><td>13</td><td>14</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P</td><td>2008^P</td></tr><tr><td>인지세</td><td>13</td><td>29</td><td>25</td><td>32</td><td>—</td></tr></table>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8.4	4.3	14.5	13	14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인지세	13	29	25	32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8.4	4.3	14.5	13	14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인지세	13	29	25	32	—																				
주요 개정연혁	○ 2004.12.31 - 감면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규모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⑥5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9호																								
신설연월일	○ 1978.12.5																								
감면내용	○ 감면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 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농어민 등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인지세</td><td>2.4</td><td>2</td><td>1.7</td><td>1.6</td><td>추정곤란</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P</td><td>2008^P</td></tr><tr><td>인지세</td><td>0</td><td>0</td><td>0</td><td>0</td><td>—</td></tr></table>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에 "농어업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2.4	2	1.7	1.6	추정곤란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인지세	0	0	0	0	—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2.4	2	1.7	1.6	추정곤란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인지세	0	0	0	0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0.12.31까지 ○ 1999.12.28 — 일몰연장: 2000.12.31 → 2003.12.31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⑥⑥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동법 시행령 제114조																													
신설연월일	○ 1997.8.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동법 제3조 업종을 창업한 자에 한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감면배제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등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창업 중소기업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인지세 면제																													
감면세목	○ 인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인지세</td><td>추정곤란</td><td>1.4</td><td>4.9</td><td>1.2</td><td>0.5</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r><tr><td>인지세</td><td>0.5</td><td>1</td><td>1</td><td>2</td><td>2</td></tr></table>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추정곤란	1.4	4.9	1.2	0.5		2004	2005	2006	2007	2008 ^P	인지세	0.5	1	1	2	2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지세	추정곤란	1.4	4.9	1.2	0.5																									
	2004	2005	2006	2007	2008 ^P																									
인지세	0.5	1	1	2	2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⑥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연월일	○ 199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r><tr><td>증권거래세</td><td>2.2</td><td>11.4</td><td>4.1</td><td>5.5</td><td>7.4</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P</td><td>2008^P</td></tr><tr><td>증권거래세</td><td>3</td><td>15</td><td>30</td><td>35</td><td>—</td></tr></table>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2008년도)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포함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권거래세	2.2	11.4	4.1	5.5	7.4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증권거래세	3	15	30	35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권거래세	2.2	11.4	4.1	5.5	7.4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증권거래세	3	15	30	35	—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⑥⑧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					
신설연월일	○ 1996.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권거래세	5.6	19.1	4	6.5	10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증권거래세	5	7	10	14	—
※ 2007년 감면세액은 잠정치,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2008년도)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⑥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3					
신설연월일	○ 1999.12.28					
감면내용	○ 감면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한국벤처투자조합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0	0	0	0	1
		2005	2006	2007 ^P	2008 ^P	
	증권거래세	3.6	1.7	1.3	—	—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2008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1.12.29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⑦⑩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5호																																		
신설연월일	○ 1978.12.30 *1998.12.31 이전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규정																																		
감면내용	○ 감면내용: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다음과 같이 주권을 편입·인출 또는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집합 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주 권을 인출하는 경우 -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 중개거래를 통하여 양 도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요건(시행령) -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 초과 - 집합투자자가 30인 이하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95%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투자신탁 가입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r><tr><td>증권거래세</td><td>919</td><td>1,100</td><td>631</td><td>1,577</td><td>3,233</td><td>1,150</td></tr><tr><td></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 colspan="2">연평균 증가율</td></tr><tr><td>증권거래세</td><td>1,056</td><td>1,571</td><td>1,738</td><td>2,052</td><td colspan="2">9.3</td></tr></table>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919	1,100	631	1,577	3,233	1,150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 증가율		증권거래세	1,056	1,571	1,738	2,052	9.3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919	1,100	631	1,577	3,233	1,150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 증가율																														
증권거래세	1,056	1,571	1,738	2,052	9.3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0.12.31까지) ○ 2000.12.29: 일몰연장(2000.12.29 → 2003.12.31) ○ 2003.12.30: 일몰연장(2003.12.31 → 2006.12.31) ○ 2006.12.30: 일몰연장(2006.12.31 → 2008.12.31) ○ 2008.12.26: 일몰연장(2008.12.31 → 2009.12.31)																																		

⑦① 집합투자업자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5호					
신설연월일	○ 1978.12.30 *1998.12.31 이전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규정					
감면내용	○ 감면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종합 금융회사 제외)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 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집합투자업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권거래세	57.7	23	36	236	461
		2004	2005	2006	2007 ^P	2008 ^P
	증권거래세	155	6	0.4	0.02	누락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 일몰신설: 2000.12.31까지					
	○ 2000.12.29 － 일몰연장: 2000.12.29 → 2003.12.31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8.12.31					
	○ 2008.12.26 － 일몰연장: 2008.12.31 → 2009.12.31					

⑦② 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0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5조																												
신설연월일	○ 1998.11.17																												
감면내용	○ 감면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 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투자회사’의 요건(시행령) －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인 초과 － 집합투자자가 30인 이하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95%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투자회사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1999</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h>2004</th></tr><tr><td>증권거래세</td><td>137</td><td>217</td><td>53</td><td>229</td><td>231</td><td>250</td></tr><tr><th></th><th>2005</th><th>2006</th><th>2007^p</th><th>2008^p</th><th colspan="2">연평균 증감율</th></tr><tr><td>증권거래세</td><td>263</td><td>361</td><td>384</td><td>－</td><td colspan="2">14.8</td></tr></table>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2008년도)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연평균증감율에는 2007년 감면세액(잠정치) 제외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137	217	53	229	231	250		2005	2006	2007 ^p	2008 ^p	연평균 증감율		증권거래세	263	361	384	－	14.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137	217	53	229	231	250																							
	2005	2006	2007 ^p	2008 ^p	연평균 증감율																								
증권거래세	263	361	384	－	14.8																								
주요 개정연혁	○ 1998.12.28: 일몰신설(2000.12.31까지) ○ 2000.12.29: 일몰연장(2000.12.29 → 2003.12.31) ○ 2003.12.30: 일몰연장(2003.12.31 → 2006.12.31) ○ 2004.12.31: 감면대상 확대(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추가) ○ 2006.12.30: 일몰연장(2006.12.31 → 2008.12.31) ○ 2008.12.26: 일몰연장(2008.12.31 → 2009.12.31)																												

㉓ 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5호 동 법 시행령 제115조제7항
신설연월일	○ 1999.8.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부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을 포함)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부도중소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0원(감면실적 없음)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2008년도)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통합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 1999.8.31 - 제도도입 - 일몰신설: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⑦④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간 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6호
신설연월일	○ 2000.10.21
감면내용	○ 감면내용: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2①1)」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지주회사: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로서 금융위원회의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0원(감면실적 없음) ※ 2007년 감면세액은 잠정치,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2008년도)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포함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0.10.21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5.12.31까지 ○ 2005.12.31 － 일몰연장: 2005.12.31 → 2007.12.31 ○ 2007.12.31 － 일몰연장: 2007.12.31 → 2009.12.31

⑦⑤ 연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8호																				
신설연월일	○ 2001.5.24																				
감면내용	○ 감면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관리·운용법인 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 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국민연기금등 주식투자가 허용된 연기금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증권거래세 면제																				
감면세목	○ 증권거래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r><tr><td>증권거래세</td><td>4.7</td><td>21</td><td>47</td><td>28</td></tr><tr><td></td><td>2005</td><td>2006</td><td>2007^P</td><td>연평균 증감율</td></tr><tr><td>증권거래세</td><td>32</td><td>23</td><td>36</td><td>37.4</td></tr></table>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2008년도)에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항목에 포함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연평균증감율에는 2007년 감면세액(잠정치) 제외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4.7	21	47	28		2005	2006	2007 ^P	연평균 증감율	증권거래세	32	23	36	37.4
	2001	2002	2003	2004																	
증권거래세	4.7	21	47	28																	
	2005	2006	2007 ^P	연평균 증감율																	
증권거래세	32	23	36	37.4																	
주요 개정연혁	○ 2001.5.24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⑦⑥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신설연월일	○ 1996.1.1														
감면내용	○ 감면내용: 국내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 관세 경감율(시행규칙): 50% ○ 감면 대상 품목(시행규칙) － 검측차, 궤도회로 장치 정보전송설비 등 37개 품목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감면방법	○ 관세 감면														
감면세목	○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table><tr><td></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d>2005</td></tr><tr><td>관 세</td><td>174</td><td>134</td><td>59</td><td>47</td><td>69</td><td>58</td></tr></table>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감면세액 정보 없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관 세	174	134	59	47	69	5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관 세	174	134	59	47	69	58									
주요 개정연혁	○ 1999.12.28 － 감면확대: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 추가(일몰기한: 2000.12.31까지) ○ 2000.12.31 － 일몰종료(일부): 인천국제공항 건설용 물품 ○ 2005.12.31 － 일몰신설: 2007.12.31까지 ○ 2007.12.31 － 일몰종료(일부): 도시철도·일반철도·고속철도 → 고속철도 － 감면율 축소(시행규칙): 85% → 50% － 일몰연장: 2007.12.31 → 2009.12.31														

㉓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신설연월일	○ 1980.1.1																								
감면내용	○ 감면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2·1)」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경감 ○ 관세 경감율(시행규칙): 50% ○ 감면 대상 품목(시행규칙) － 태양열·태양광·풍력·수소 또는 연료전지·바이오·해양·폐기물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등 81개 품목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기 제조업체																								
감면방법	○ 관세 감면																								
감면세목	○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table><tr><td></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r><tr><td>관 세</td><td>0</td><td>0</td><td>0</td><td>4</td><td>1</td></tr><tr><td></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td></tr><tr><td>관 세</td><td>6</td><td>39</td><td>44</td><td>188</td><td>－</td></tr></table>		2000	2001	2002	2003	2004	관 세	0	0	0	4	1		2005	2006	2007	2008 ^p	－	관 세	6	39	44	188	－
	2000	2001	2002	2003	2004																				
관 세	0	0	0	4	1																				
	2005	2006	2007	2008 ^p	－																				
관 세	6	39	44	188	－																				
주요 개정연혁	○ 2001.12.29: 감면대상 확대(태양에너지 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 대체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로 확대) ○ 2002.12. 4: 감면대상 확대(시행규칙), 저철분 유리 등 26개 추가 ○ 2005.12.31: 일몰신설(2007.12.31까지) － 감면대상 확대(시행규칙): 태양광 리본 등 14개 품목 추가 ○ 2007.7.1 － 감면대상 축소(시행규칙): 반사필름(Teflon Solar Film) 등 2개 품목제외 － 감면대상 확대(시행규칙): 알루미늄판재 등 14개 품목 추가 ○ 2007.12.31 － 감면율 축소(시행규칙): 65% → 50%, 일몰연장: 2007.12.31 → 2009.12.31 ○ 2009.1.1 － 감면대상 축소(시행규칙):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제외 － 감면대상 확대(시행규칙):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 추가																								

⑦⑧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양수·관리·운용·처분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동 법 제120조제1항제12호
신설연월일	○ 1998.9.16
감면내용	○ 감면요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5)」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세·취득세 등을 감면함 ○ 감면내용 1) 등록세 감면 － 다음의 등기에 대하여 1)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2) 「지방세법(§138①)」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3배)를 배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2) 취득세 감면 －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유동화전문회사
감면방법	○ 지방세 감면 - 취득세·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 취득세·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지방세 감면)
주요 개정연혁	○ 1998.9.16. － 제도도입: 취·등록세 면제 － 일몰기한: 1999.12.31까지 ○ 1998.12.31 － 감면확대: 등록세 감면대상에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가등기) 추가 ○ 1999.12.28 － 일몰연장: 1999.12.31 → 2001.12.31 ○ 2001.8.14 － 감면대상 유동화자산 양수범위 확대: 자산보유자 →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 추가 ○ 2001.12.29 － 일몰연장: 2001.12.31 → 2003.12.31 ○ 2005.12.31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감면축소: 전액면제 → 50%감면 ○ 2006.12.31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⑦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양수·관리·운용·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6호 동 법 제120조제1항제15호
신설연월일	○ 2004.1.20
감면내용	○ 감면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세·취득세 등을 감면함 ○ 감면내용 1) 등록세 감면 - 다음의 등기에 대하여 1) 등록세를 면제하고, 2) 「지방세법(§138①)」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3배)를 배제 ·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2) 취득세 감면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면방법	○ 지방세 감면 - 취득세·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 취득세·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지방세 감면)
주요 개정연혁	○ 2004.1.20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6.12.31까지 ○ 2006.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⑧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약정채결자산의 양수·관리·운용·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0호
신설연월일	○ 2000.10.21
감면내용	○ 감면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2·8)」에 따른 약정채결자산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등기에 대하여 1) 등록세를 면제하고, 2) 「지방세법(§138①)」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증과(3배)를 배제함 ○ 감면대상 등기 -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감면방법	○ 지방세 감면 - 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 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지방세 감면)
주요 개정연혁	○ 2000.10.21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3.12.31까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⑧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재산의 등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9호 동 법 제120조제1항제25호
신설연월일	○ 2003.12.30
감면내용	○ 감면내용: 「산업발전법(§15), 법률 제9584호 이전의 것」에 따라 등록된 기업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함)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2) 「지방세법(§138①)」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3배)를 배제함 * 기업구조조정조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기업구조조정조합
감면방법	○ 지방세 감면 - 취득세·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 취득세·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지방세 감면)
주요 개정연혁	○ 2003.12.30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6.12.31까지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2009.4.1 - 감면대상 축소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 기업구조조정조합

⑧2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 동 법 제120조제4항
신설연월일	○ 2001.8.14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1)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2) 「지방세법(§138①)」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3배)를 배제함 ○ 감면 대상 부동산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법인세법(§51의2①6)」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임대주택법(§17①2)」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배제 – 「지방세법§112②」에 따라 취득세 5배 중과대상 부동산은 제외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일몰 없음)
수혜자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감면방법	○ 지방세 감면 – 취득세·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 취득세·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지방세 감면)
주요 개정연혁	○ 2001.8.14 – 제도도입(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 ○ 2004.1.20 – 감면확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추가 ○ 2004.7.26 – 감면확대: 「법인세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추가 ○ 2004.12.31: 일몰신설(2006.12.31까지) ○ 2006.12.30 – 일몰연장(2006.12.31 → 2009.12.31), 감면확대(「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추가)

⑧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배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7항
신설연월일	○ 2000.10.2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를 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138①)」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3배)를 배제함 ○ 감면대상 - 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 「법인세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감면방법	○ 지방세 감면 - 등록세 감면
감면세목	○ 등록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지방세 감면)
주요 개정연혁	○ 2000.10.21 - 제도도입 - 일몰기한: 2003.12.31까지 ○ 2001.5.24 - 감면대상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2001.8.14: 감면대상 확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6.12.31 - 감면대상 확대: 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추가 ○ 2004.7.26: 감면대상 확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추가) ○ 2004.12.31: 감면대상 확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추가) ○ 2006.12.30 - 일몰연장: 2006.12.31 → 2009.12.31 - 감면대상 확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추가 ○ 2007.12.31 - 감면대상 확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추가

⑧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12																												
신설연월일	○ 1966.8.3 ※ 현행법 규정 이전, 「외자도입법(1969.8.3제정)」 →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1997.1.13)」 →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제정)」에서 규정																												
감면내용	○ 감면내용: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 동안 면제 ○ 면제대상 계약(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감면세목	○ 법인세,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9</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td></tr><tr><td>법인세</td><td>추정곤란</td><td>242</td><td>288</td><td>239</td><td>207</td><td>—</td></tr><tr><td></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d>연평균증가율</td></tr><tr><td>법인세</td><td>244</td><td>4</td><td>23</td><td>96</td><td>160</td><td>-5.0</td></tr></table> * 2000년부터 소득세 감면액: 0원		1999	2000	2001	2002	2003	—	법인세	추정곤란	242	288	239	207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244	4	23	96	160	-5.0
	1999	2000	2001	2002	2003	—																							
법인세	추정곤란	242	288	239	207	—																							
	2004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가율																							
법인세	244	4	23	96	160	-5.0																							
주요 개정연혁	○ 1999.5.24 - 기술도입계약 관련 조세감면 조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이관 (종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 ○ 2000.12.29 - 감면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에 대한 감면적용 요건의 명확화(제3항)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⑧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신설연월일	○ 2002.4.20
감면내용	○ 감면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6)」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 발생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간 소득이 없을 경우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3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 간 50%를 감면 ○ 감면대상 사업(시행령) - 「생명공학육성법§2」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2·2」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산업발전법§5·①」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산업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법인세 0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2.4.20 - 제도 도입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 감면내용 추가: 사업 개시일부터 5년 간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 감면기준 연도를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로 함

⑧6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신설연월일	○ 2002.4.20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 ○ 감면대상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 발생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간 소득이 없을 경우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3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 간 50%를 감면. 단, 감면대상사업 중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는 각각 50%, 25%를 감면 2. 감면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 취득세 및 등록세: 세액 전액 - 재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3년 간 100%, 그 다음 2년 간 50% 감면 - 토지 분 재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3년 간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을, 그 다음 2년 간 50%를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 등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2003</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r><tr><td>계</td><td>1</td><td>0.1</td><td>0</td><td>1</td><td>1</td><td>0</td></tr><tr><td>소득세</td><td>0</td><td>0</td><td>0</td><td>1</td><td>1</td><td>0</td></tr><tr><td>법인세</td><td>1</td><td>0.1</td><td>0</td><td>0</td><td>0</td><td>0</td></tr></table> *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정보는 없음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계	1	0.1	0	1	1	0	소득세	0	0	0	1	1	0	법인세	1	0.1	0	0	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계	1	0.1	0	1	1	0																							
소득세	0	0	0	1	1	0																							
법인세	1	0.1	0	0	0	0																							
주요 개정연혁	○ 2002.4.20: 제도 도입 ○ 2006.12.30: 일몰 신설(2009.12.31까지)																												

⑧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11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신설연월일	○ 2002.4.20														
감면내용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121조의10) ○ 감면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감면대상 물품(시행령):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으로서 「관세법(§90 ①5)」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2.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감면내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감면대상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지구개발을 위해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 감면대상 물품(시행령): 지구 지정 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 ○ 감면제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방법	○ 관세 면제														
감면세목	○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2003</td><td>2004</td><td>2005</td><td>2006</td><td>2007</td><td>2008^P</td></tr><tr><td>관 세</td><td>1</td><td>0</td><td>0</td><td>0.2</td><td>0.3</td><td>0.1</td></tr></tabl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관 세	1	0	0	0.2	0.3	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P									
관 세	1	0	0	0.2	0.3	0.1									
주요 개정연혁	○ 2002.4.20: 제도 도입 ○ 2006.12.30: 일몰 신설(2009.12.31까지)														

⑧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19																
신설연월일	○ 2002.4.20																
감면내용	○ 감면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 ○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소재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이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다음의 조치(시행령)를 취해야 함 －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제주도내 골프장 사업자, 입장객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세목	○ 개별소비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2003</td><td>2004</td><td>2005</td></tr><tr><td>개별소비세</td><td>83</td><td>87</td><td>117</td></tr><tr><td></td><td>2006</td><td>2007</td><td>2008^P</td></tr><tr><td>개별소비세</td><td>122</td><td>143</td><td>151</td></tr></table>		2003	2004	2005	개별소비세	83	87	117		2006	2007	2008 ^P	개별소비세	122	143	151
	2003	2004	2005														
개별소비세	83	87	117														
	2006	2007	2008 ^P														
개별소비세	122	143	151														
주요 개정연혁	○ 2002.4.20 － 제도 도입 ○ 2006.12.30 － 일몰 신설: 2009.12.31까지 ○ 2007.12.31 －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과 관련 지방세 감면조항(제2항) 삭제(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																

⑧9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20
신설연월일	○ 2002.4.20
감면내용	1.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 감면내용: 「국제선박등록법(§4)」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 감면대상선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①)」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시행령) ○ 사후 관리: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취득분 2.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 감면내용: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
감면방법	○ 지방세 면제
감면세목	○ 취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지방세 감면)
주요 개정연혁	○ 2002.4.20 － 제도도입 ○ 2006.12.30 － 일몰 신설: 2009.12.31까지

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6조
신설연월일	○ 2002.4.20
감면내용	○ 감면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61)」에 의해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 동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2) 동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3)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면방법	○ 지방세 면제
감면세목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지방세 감면)
주요 개정연혁	○ 2002.4.20 - 제도도입 ○ 2006.12.30 - 일몰 신설: 2009.12.31까지

⑨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신설연월일	○ 2004.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감면 ○ 감면대상 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이후 5년 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간 100%(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50%), 그 다음 2년간 50%(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25%)를 각각 감면 2)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15년 이내로 감면비율·공제비율·감면기간·공제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감면 업종 및 투자금액 요건(시행령)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정보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시설 설치시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물류산업 등 시설 설치시 50억원 이상)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 일몰기한: 2009.12.31까지(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수혜자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 지방세 감면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등
연도별 감면세액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세·법인세: 0원 (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4.12.31 - 제도 도입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⑨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의22
신설연월일	○ 2004.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기업도시개발특별법(§2·1·다)」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 ○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다음의 조치(시행령)를 취해야 함 －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사업자, 입장객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개별소비세 면제
감면세목	○ 개별소비세
연도별 감면세액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정곤란
주요 개정연혁	○ 2004.12.31 － 제도도입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⑨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7조의3
신설연월일	○ 2007.12.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함)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사업자의 요건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또는 POS·ERP 도입 사업자 등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소득금액을 계산·신고 -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 직전 3년 수입금액 평균 대비 수입금액 1.1배 초과 신고 -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3년간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사실 등이 없을 것 - 직전 3년간 세무조사 결과 소득금액 누락비율이 10% 미만일 것 ○ 사후관리: 아래 요건 발생시 감면세액 추징 및 향후 3년간 적용배제 -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 - 당해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성실사업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법인세
연도별 감면세액	○ 2008년도 소득세, 법인세 감면액: 0원(감면실적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7.12.31 - 제도도입

⑨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설연월일	○ 1999.8.31																								
감면내용	○ 감면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0%) × 20%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2)」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전자금융거래법(§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 확인금액 포함)사용금액 -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공제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법인 관련 비용 - 신용카드 등의 변칙 사용행위 - 신규자동차 구입비 등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근로소득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2000</th><th>2001</th><th>2002</th><th>2003</th><th>2004</th></tr><tr><td>소득세</td><td>346</td><td>2,027</td><td>6,223</td><td>8,308</td><td>8,966</td></tr><tr><th></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h>연평균증감율</th></tr><tr><td>소득세</td><td>9,812</td><td>10,465</td><td>12,506</td><td>14,770</td><td>32.8</td></tr></table> * 연평균 증감율에서 시행 첫 해(9.1부터 적용)인 2000년은 제외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346	2,027	6,223	8,308	8,966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감율	소득세	9,812	10,465	12,506	14,770	32.8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346	2,027	6,223	8,308	8,966																				
	2005	2006	2007	2008 ^P	연평균증감율																				
소득세	9,812	10,465	12,506	14,770	32.8																				
주요 개정연혁	○ 1999.8.31 - 제도도입 - 시행일: 2001.1.1부터 - 적용일: 1999.9.1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 일몰기한: 2002.11.30까지																								

구 분	주요 내용
	○ 2001.8.14 - 공제율 확대 (총급여액 10% 초과금액의 10% → 20%) - 공제한도 확대(300만원 → 500만원) ○ 2002.12.11 - 일몰연장: 2002.11.30 → 2005.11.30 -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20% → 30%) - 공제대상 조정: 공제대상에 지로 납부 수강료 등을 추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 제외 ○ 2003.12.30 - 공제대상에 현금영수증·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 모든 결제수단의 공제율을 20%로 일원화(직불카드 30% → 20%) ○ 2004.12.31 - 공제 최저 사용금액 상향조정(총급여액의 10%초과 → 15%초과) ○ 2005.12.31 - 일몰연장: 2005.12.1 → 2007.12.1 - 공제율 축소: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20% → 15% ○ 2006.12.30 - 공제대상 확대: 기명화된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현금영수증 사용액 범위에 현금거래사실 확인 금액 포함 ○ 2007.12.31 - 일몰연장: 2007.11.31→2009.12.31 - 공제율 조정: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20% 초과분의 20% - 공제대상 확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추가

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 부칙 제17조																												
신설연월일	○ 1985.12.23																												
감면내용	○ 감면내용: 목돈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제2조제3항)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농어민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감면세목	○ 소득세, 상속·증여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d></td><td>1998</td><td>2000</td><td>2001</td><td>2002</td><td>2003</td><td>2004</td></tr><tr><td>소득세</td><td>359</td><td>342</td><td>300</td><td>152</td><td>99</td><td>119</td></tr><tr><td></td><td></td><td>2005</td><td>2006</td><td>2007^P</td><td>2008^P</td><td>연평균증감율</td></tr><tr><td>소득세</td><td>111</td><td>85</td><td>56</td><td>56</td><td>－</td><td>－20.7</td></tr></table> * 2008년 감면세액은 조세지출보고서(2008년도)에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359	342	300	152	99	119			2005	2006	2007 ^P	2008 ^P	연평균증감율	소득세	111	85	56	56	－	－20.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득세	359	342	300	152	99	119																							
		2005	2006	2007 ^P	2008 ^P	연평균증감율																							
소득세	111	85	56	56	－	－20.7																							
주요 개정연혁	○ 1994.12.2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폐지의결 － 적용기한: 1999.1.1부터 ○ 제도연장: 1998.12.31 → 2000.12.31 ○ 제도연장: 2000.12.31 → 2003.12.31 ○ 제도연장: 2003.12.31 → 2006.12.31 ○ 제도연장: 2006.12.31 → 2009.12.31																												

⑨6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 95①1·2)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 동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신설연월일	○ 1979.1.1 ※ 폐기물처리용 물품은 1994.1.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 감면대상 물품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 포함)의 배출방지·처리용 기계·기구·시설·장비 : 회수유 저장용기·세라믹 블루 등 86개 품목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용 기계·기구: 증기터빈·가스엔진 등 27개 품목 ○ 감면율(시행규칙): 50% ○ 일몰기한(시행규칙): 2009.12.31까지										
수혜자	○ 환경오염방지 물품 취급업체										
감면방법	○ 관세감면										
감면세목	○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P</th></tr><tr><td>관 세</td><td>7</td><td>136</td><td>260</td><td>205</td></tr></table> * 관세감면 정보는 2005년 실적 이후부터 발표		2005	2006	2007	2008 ^P	관 세	7	136	260	205
	2005	2006	2007	2008 ^P							
관 세	7	136	260	205							
주요 개정연혁 (시행규칙)	○ 2005.12.30 －일몰신설: 2007.12.31까지 ○ 2007.12.31 －일몰연장: 2007.12.31 → 2009.12.31										

⑨7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 95①4)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4항제4호								
신설연월일	○ 1991.1.1								
감면내용	○ 감면내용: 다음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 감면대상 물품 －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 물류자동화시스템 ○ 감면율(시행규칙): 20%(중소제조업에 수입물품은 40%) ○ 일몰기한(시행규칙): 2009.12.31까지								
수혜자	○ 공장자동화 물품 수요업체								
감면방법	○ 관세 감면								
감면세목	○ 관세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 <table><tr><th></th><th>2006</th><th>2007</th><th>2008^P</th></tr><tr><td>관 세</td><td>1,109</td><td>884</td><td>830</td></tr></table> * 관세감면 정보는 2006년 실적 이후부터 발표		2006	2007	2008 ^P	관 세	1,109	884	830
	2006	2007	2008 ^P						
관 세	1,109	884	830						
주요 개정연혁 (시행규칙)	○ 1994.11.8: 단계적 감면율 축소, 폐지예정(1994.3/4분기: 100% , 4/4분기: 45%, 1995: 40%, 1996: 30%, 1997: 20%) ○ 1997.12.31 － 일몰연장: 1997.12.31 → 2000.12.31 － 감면확대: 20% → 40%(중소제조업체 50%) ○ 2000.12.30: 일몰연장(2000.12.31 → 2005.12.31) ○ 2005.12.31 － 일몰연장 :2005.12.31 → 2007.12.31 － 감면율 축소: 40%→ 30%(중소기업 50%→ 현행유지) ○ 2007.12.31: 일몰연장(2007.12.31 → 2008.12.31) ○ 2008.12.31 － 일몰연장: 2008.12.31 → 2009.12.31 － 감면율 축소: 30% → 20%(중소기업: 50% → 40%)								

⑨⑧ 미용·성형수술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연월일	○ 2007.2.28
감면내용	○ 감면내용: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 *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대상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등(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등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3% 초과의료비(본인·장애인 등: 전액, 자녀 등: 50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09.12.31까지
수혜자	○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
감면방법	○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감면세목	○ 소득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미용·성형 등 의료비)
주요 개정연혁	○ 2007.2.28 - 제도도입 - 적용기한: 2006.1.1부터 2008.11.30까지 ○ 2008.2.22 - 연말정산 시기조정에 따른 의료비 공제대상 기간 조정 : 2008.11.30까지 → 2008.12.31 까지 ○ 2009.2.4 - 일몰연장: 2008.12.31 → 2009.12.31

⑨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 영세율 적용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신설연월일	○ 1977.1.1 ※ 1977.1.1~1991.6.30: 영세율 적용(음식용역 포함), 1994.1.1~1994.12.31, 2001.1.1~2004.12.31: 영세율 적용(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함)
감면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정) 및 음식용역(숙박요금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
수혜자	○ 관광호텔 등, 외국인 관광객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0.12.31 - 제도 재도입(관광호텔 공급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함) - 일몰기한: 2002.12.31 ○ 2002.12.30 - 일몰연장: 2002.12.31 → 2003.6.30 ○ 2003.6.30 - 일몰연장: 2003.6.30 → 2003.12.31 ○ 2003.12.30 - 일몰연장: 2003.12.31 → 2004.12.31 ○ 2004.12.31: 일몰종료 ○ 2007.12.31 - 제도 재도입(관광호텔 공급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한함) - 적용기한: 2007.7.1 ~ 2008.12.31 ○ 2009.2.4 - 일몰연장: 2008.12.31 → 2009.12.31 - 감면대상 확대: 휴양콘도미니엄업 추가, 음식용역(숙박요금과 함께 공급) 포함 - 적용기한: 2008.7.24 ~ 2009.12.31(휴양 콘도미니엄업은 2009.2.4부터)

㉑ 간이과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구 분	주요 내용
감면근거	○ 부가가치세법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조제4항
신설연월일	○ 2006.2.9
감면내용	○ 감면내용: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 ○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20%(소매업은 2009.12.31까지 15%)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업: 30% －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40%(음식·숙박업은 2009.12.31까지 30%) * 부가가치율: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 일몰기한(시행령): 2009.12.31까지
수혜자	○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
감면방법	○ 간접세 감면 - 기 타
감면세목	○ 부가가치세
연도별 감면세액	○ 감면정보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06.2.6 － 제도도입: 소매업(20% → 15%, 5%p 인하), 음식·숙박업(40% → 30%, 10%p 인하) － 일몰기한: 2007.12.31까지 － 적용시기: 2006년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 2008.2.4 － 일몰연장: 2007.12.31 → 2009.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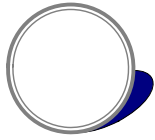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200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Hacker, Jacob S., "The divided welfare state: the battle over public and private social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2002.

Toder, Eric J. "Tax Expenditure and Tax Reform: Issues and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Meetings in Miami, Florida, November 19, 2005.



부 록

* 2009년 말 일몰도래 하는 비과세·감면항목 내역

부 록

[부표] 2009년 말 일몰도래 하는 비과세·감면항목 내역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55	69	96	73		일몰연장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조의2	4	7	8	6		일몰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1,883	1,758	1,707	1,783		일몰연장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등 특례	조특법 제8조			0	0		일몰연장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조특법 제10조의2			3	3		일몰연장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511	461	1,128	700		일몰연장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		18	8	13		일몰연장 감면축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조의2			1	1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특법 제13조	42	19	39	33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14조	0.16	0	0	0.1		일몰연장 감면축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18조	17	16	170	68		일몰연장 감면축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선택사항)에 대한 일몰(15%, 제2항)은 2012.12.31까지	조특법 제18조의2①	128	217	288	211		일몰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제22조	404	276	347	342		일몰연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281	394	321	332		일몰연장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112	128	177	139		일몰연장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283	676	1,304	754		일몰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조특령 제23조	20,681	18,247	21,035	19,988		일몰종료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특법 제29조	누락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2	0	0	0	0		일몰종료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3				0		일몰종료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4			0.5	1		일몰종료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5			0	0		일몰종료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6조의6				0		일몰종료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47조의3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55조의2	0	0	0	0		일몰종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4조	51	85	82	73		일몰연장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66조	145	186	327	219		일몰연장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67조	8	11	13	11		일몰연장
농업회사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특법 제68조	62	35	30	42		일몰연장
기부금의 과세특례 * 단, 대학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기부금에 대한 일몰기한은 2010.12.31까지	조특법 제73조	10,435	12,724	16,044	13,068		일몰연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74조①	758	874	1,195	942		일몰연장
기금 관리·운용법인이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74조③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77조	80	465	1,297	614		일몰연장
공공사업을 위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조특법 제77조의2			0	0		일몰연장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2			0	0.4		일몰연장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3			0	0		일몰연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4			0	0		일몰연장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5			0	0		일몰종료
공익사업 수용 등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7			0	0		일몰연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87조	377	382*	항목통합	380		일몰연장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2	0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종료
고수익·고위험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7		항목통합	항목통합	정보없음	항목통합	일몰종료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특법 제91조의9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제91조의10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91조의11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94조	95	110	148	118		일몰연장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특법 제96조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	조특법 제100조	0.17	0.15	0.15	0.16		일몰종료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법 제101조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02조	1.0	0	0	0.3		일몰연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조세지원	조특법 제104조의2	0	0	0	0		일몰종료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104조의11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제105조①3	1,504	2,531	1,624	1,886		일몰연장
SOC시설로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제105조①3의2	4,747	2,497	2,783	3,342		일몰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1, 조특법 제111·2조	29	38	34	34		일몰연장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2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몰연장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3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몰연장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제106조①9	135	58	76	90		일몰연장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법 제106조의5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특법 제108조	5,846	5,243	5,818	5,636		일몰연장 감면축소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109조의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특법 제111조의2	—	—	—	정보없음	신규도입	일몰종료
농협 등의 당해 조합원 용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116조①5	76	63*	80	70		
농협 등의 조합원 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6	7	8*	항목통합	8		일몰연장
농어촌정비사업등과 관련한 재산권 이전문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7	25	32*	항목통합	29		일몰연장
농촌주택개량자금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9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11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①19	1	2	2	2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회사 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	30	35*	항목통합	33		일몰연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2	10	14*	항목통합	12		일몰연장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2의3	1.7	1.3*	항목통합	2		일몰연장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34	1,571	1,738	2,052	1,787		일몰종료
증권투자신탁회사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5	0.4	0.02*	정보없음	0.2		일몰종료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0	361	384*	항목통합	373		일몰종료
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5	0	0*	항목통합	0		일몰종료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 간 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6	0	0*	항목통합	0		일몰연장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연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제117조①18	23	36*	항목통합	30		일몰종료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제118조①1	누락	누락	누락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제118조①3	39	44	188	90		일몰연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양수·관리· 운용·처분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특법 제119조①13, 조특법 제120조①12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양수·관리·운용·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①16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약정체결 자산의 양수·관리·운용·처분시 저당권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①20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부터 취득재산의 등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특법 제119조①29, 조특법 제120조①25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조특법 제119조⑥1, 조특법 제120조④1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 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특법 제119조⑥2, 조특법 제120조④2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특법 제119조⑥4, 조특법 제120조④4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종료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⑦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감면축소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6	23	96	160	93		일몰종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제121조의8	0	0	0	0		일몰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제121조의9	1	1	0	1		일몰연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특법 제121조의10	0.2	0.3	0.1	0.2		일몰연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조특법 제121조의11						일몰연장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	조특법 제121조의14	122	143	151	139		일몰연장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5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6	—	—	—	정보없음	지방세	일몰연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8	0	0	0	0		일몰연장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17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일몰연장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등	조특법 제122조의3			0	0		일몰연장

비과세·감면 항목	근거법령	2006	2007	2008 (잠정)	3년평균 감면세액	비 고	2009세제 개편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10,465	12,506	14,770	12,580		일몰연장 감면축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특법 제4806호 부칙 제17조	56	56*	항목통합	56		일몰연장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①1·2	136	260	205	200		일몰연장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①4	1,109	884	830	941		일몰연장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소득령 제110조	—	—	—	정보없음	기부금 공제항목에 포함	일몰종료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부가령 제26조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종료
소매업·음식숙박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부가령 제74조의3④	—	—	—	정보없음	누락	일몰연장
합 계	항목수 : 106개	62,732	63,809	74,542	67,345	—	—

- 주 1. 감면금액은 2006년~2008년 감면세액('08년은 잠정액)으로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2007~2008)」 참조.
2. 감면금액 중 *는 2008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각종 감면항목의 통합으로 인해 감면세액의 확인이 곤란하여 2007년도 보고서의 감면세액(2007년도 잠정액)으로 대체
3. 올해 일몰도래 항목은 총 106개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특례(조특 제18조의2①)'의 경우 일몰을 종료하더라도 제2항의 감면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감면축소에 해당

[경제현안분석 목록]

	제 목	집필	발간
1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김기승, 임일섭, 전승훈	2004. 10
2	조세지출예산제도와 정책과제	전승훈	2004. 12
3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기승	2005. 5
4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규율의 확립 － 지출상한선을 중심으로	정문중	2005. 6
5	국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감독체제의 모색	문성환	2005. 7
6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현황 및 과제	송원근	2005. 12
7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전승훈	2006. 1
8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김기승	2006. 2
9	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문성환	2006. 5
10	2000~2005년 경제예측의 경험과 단기예측 방식의 개선방향	유승선	2006. 5
11	미국의 재정개혁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문중	2006. 6
12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송원근	2006. 6
13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2007. 5
14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욱	2007. 6
15	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	정문중	2007. 6
16	유가 상승의 원인 및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분석	이영환, 전승훈 홍인기	2007. 7
17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 추정	황중률	2007. 7
18	구조조정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신동진	2007. 8
19	과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	문성환	2007. 8
20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정상훈	2007. 9
21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	황진영	2007. 9
22	한국의 실질 GDP 장기 예측 : 2007~2050년	장인성	2007. 11
23	원화가치 변동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성명기	2007. 11
24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 필요성 검토	황진영	2007. 12
25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신동진	2007. 12
26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이영환, 이성규	2008. 1
27	환율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연훈수	2008. 4
2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정상훈, 이충언	2008. 8

	제 목	집 필	발 간
29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	정지은, 홍인기, 전승훈	2008. 9
30	OECD 주요국가 초과세수 발생과 재정규율 사례	이남수, 이성규	2008. 9
31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종합부동산세	이영환, 신영임	2008. 11
32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R&D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훈	2008. 11
33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정지은	2008. 11
34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 목적세 정비안을 중심으로	이영환, 정지은	2008. 11
35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심혜정	2008. 12
36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검토	황진영	2008. 12
37	우리나라 외환금융시장 취약성 비교 분석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8. 12
38	경제위기의 전개와 대응 -외환위기와 최근의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	신후식, 유승선, 연훈수	2009. 3
39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박승준	2009. 4
4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신동진	2009. 7
41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이영환, 신영임	2009. 8
42	금융안정화대책의 정책효과와 출구전략의 방향	신동진	2009. 11
43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이영환, 황진영, 신영임	2009. 11
44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정지은	2009. 11